


농 지 법 령 집

2006. 1.

< 하이퍼링크 앞으로/뒤로 이동 >

기본 도구 상자의 [하이퍼링크 앞으로/뒤로] 아이콘()을 이용하면, 하이퍼링크를 실행한 후 이동하기 직전의 위치로 커서를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축키 : <Ctrl+Q,R> 하이퍼링크 앞으로 <Ctrl+Q,B> 하이퍼링크 뒤로

농 립 부

목 차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2

- 농지법 시행령 별표 / 218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 229
-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 23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 32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335

농지법 시행령 관련 고시 / 373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374
-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 375
-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 377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 / 379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찾 아 보 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 12 第2條 定義 / 13</p> <p>第3條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 18 第4條 國家 등의 義務 / 18 第5條 國民의 義務 / 19</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農地의 所有</p> <p>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 19</p> <p>제7조 農地의 所有상한 / 23 第8條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 12 제2조 농지의 범위 / 13 제3조 농업인의 범위 / 15</p> <p>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지의 소유</p> <p>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20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 21</p> <p>제6조 삭제 <2002.12.31> / 23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25 제8조 삭제 <2002.12.31> / 26 제9조 삭제 <2002.12.31> /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 1조 목적 / 12 제 2조 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 14 제 3조 상시종사의 범위 / 16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지의 소유</p> <p>제4조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 19 제5조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20 제6조 삭제 <1999.12.7> / 23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26</p>

第9條 農地의 委託經營 / 29

第10條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 등의 처분 / 30

第11條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 33

제11조의2 처분명령의 유예 / 34

第12條 擔保農地의 취득 / 36

第3章 農地의 이용

第1節 農地의 利用增進 등

第13條 農地利用計劃의 수립 / 39

第14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 43

第15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 44

第16條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 45

第17條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告示 및 효력 / 47

第18條 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 49

第19條 代理耕作者의 지정등 / 49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26

제11조 농지의 위탁경영 / 29

제11조의2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31

제12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 33

제13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 / 36

제14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 37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5조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 39

제16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40

제17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 41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 43

제19조 등기의 촉탁 / 48

제20조 유휴농지의 범위 / 49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50

제22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 51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 33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 33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 37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 38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42

제13조 농지이용실태조사 / 43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45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47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 48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 / 51

第20條 土壤의 개량·보전 / 54

第21條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 56

第2節 農地의 賃貸借 등

第22條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 58

第23條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 60

第24條 삭제 <1999.3.31> / 61

第25條 삭제 <1999.3.31> / 61

第26條 默示의 更新 / 61

第27條 삭제 <1999.3.31> / 61

第28條 賃貸人의 地位承繼 / 62

第29條 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 62

第4章 農地의 보전 등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지정·運用

第30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 62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 63

第32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 64

제23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 53

제24조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 54

제24조의2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57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59

제26조 삭제 <1999.10.11> / 61

제27조 삭제 <1999.10.11> / 61

제28조 삭제 <1999.10.11> / 61

제29조 삭제 <1999.10.11> / 61

제30조 삭제 <1999.10.11> / 61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제30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 62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64

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 / 52

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 53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 등의 지원 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 55

제21조 표준계약서 / 60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제22조 주민의견 청취 / 63

제22조의2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 64

第33條 農業振興地域 등의 변경·해제 / 66

第34條 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69

第35條 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 79

第2節 農地의 轉用

第36條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 80

第37條 農地의 轉用申告 / 89

第38條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등 / 92

제32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65

제33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66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69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76

제36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79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80

제38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83

제39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 87

제40조 농지의 전용신고 / 89

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 92

제4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92

제4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 95

제4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95

제23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 74

제24조 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 / 75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5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80

제2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 82

제27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83

제28조 농지전용허가 / 84

제29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87

제30조 농지전용 신고 / 89

제31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92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 93

제3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94

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96

第39條 農地轉用許可 등의 제한 / 103
第40條 농지보전부담금 / 109

第41條 轉用許可의 取消등 / 131

제45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98
제46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
절차 등 / 99
제47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 101
제48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102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103
제50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 109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110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112
제53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115
제5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 116

제5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119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122
제5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125
제57조의2 부과기준 / 127
제57조의3 결손처분 등 / 128
제57조의4 부과·수납업무 수수료 등 / 129

제5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 130
제58조의2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
한 정당한 사유 / 131

제35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102
제35조의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 105

제3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110
제3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 112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 115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 116
제40조 납입기간의 연장 / 117
제41조 독촉장 등 / 118
제4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차진납부 / 119
제4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119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122
제44조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
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125
제44조의3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127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130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 131

第42條 用途變更의 승인 / 133
第43條 農地의 地目變更 制限 / 135
第44條 原狀回復등 / 137
第45條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 138

第3節 農地管理委員會 등

第46條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 139
第47條 委員會의 구성 / 140

第48條 委員會의 機能 / 144
第49條 經費補助 / 145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145
第51條 農地原簿의 작성비치 / 145

第52條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 148

제59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132
제60조 용도변경의 승인 / 133

제61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138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6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 140
제63조 위원의 정수 등 / 140
제64조 위원의 임기 / 142
제65조 위원의 선임 / 142
제66조 위원의 해임 / 142
제67조 회의 / 143
제68조 위원회의 운영 / 143
제69조 위원회의 기능 / 144
제70조 수당 등 / 145

제71조 농지원부의 작성 / 145

제47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133

제48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138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49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141

제50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 145
제51조 농지원부등의 관리 / 146
제52조 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 / 148
제53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 148
제54조 자경증명의 발급 / 149

第5章 補則

第53條 權限의 委任·委託등 / 150

第54條 褒賞金 / 155

第55條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特例 / 157

第56條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 / 157

第57條 청문 / 158

第58條 手數料 / 159

第6章 罰則

第59條 罰則 / 161

第60條 罰則 / 161

第61條 罰則 / 162

第62條 罰則 / 162

第63條 兩罰規定 / 163

第64條 삭제 <1999·3·31> / 163

第65條 履行强制金 / 163

부 칙

제5장 보칙

제72조 권한의 위임 / 150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 155

제74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 157

제75조 수수료 / 159

제76조 삭제 <1999·10·11> / 163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163

제78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165

부 칙

제5장 보칙

제54조의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 처리 / 150

제55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 155

제56조 포상금의 지급 / 155

제57조 증표 / 158

제58조 삭제 <1998·6·25> / 158

제59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163

부 칙

1994.12.22 법률4817 / 167
1995.12.29 법률5108 / 180
1996. 8. 8 법률5153 / 180
1997. 1.13, 법률5279 / 182
1997. 8.22, 법률5371 / 182
1997.12.13 법률5453 / 183
1997.12.13 법률5454 / 183
1998. 9.16 법률5555 / 183
1999. 2. 5 법률5758 / 184
1999. 2. 5 법률5759 / 186
1999. 3.31 법률5948 / 187
1999.12.31 법률6073 / 191
2000. 1.21 법률6188 / 196
2000. 1.28 법률6241 / 197
2002. 1.14 법률6597 / 199
2002. 2. 4 법률6656 / 200
2002.12.18 법률6793 / 201
2002.12.30 법률6841 / 202
2005. 1.14 법률7335 / 203
2005. 3.31 법률7459 / 204
2005. 7.21 법률7604 / 208

1995.12.22 대령14835 / 167
1996. 8. 8 대령15135 / 180
1996.12.31, 대령15229 / 182
1997. 9.11, 대령15480 / 184
1999. 4.19, 대령16254 / 187
1999. 5.24 대령16348 / 191
1999.10.11 대령16571 / 192
1999.12.28 대령16646 / 192
1999.12.28 대령16647 / 194
2000. 3.13 대령16756 / 196
2000. 3.24 대령16757 / 197
2001. 9.12 대령16757 / 198
2002. 3.30 대령17560 / 199
2002.12.31 대령17869 / 201
2003. 6.30 대령18039 / 202
2003. 9.29 대령18108 / 203
2004. 3.17 대령18312 / 203
2004. 4.24 대령18377 / 203
2004. 6.29 대령18457 / 204
2004. 8.10 대령18515 / 205
2004.12.30 대령18619 / 205
2005. 6.30 대령18931 / 206
2005. 7.27 대령18978 / 207
2006. 1.20 대령19281 / 208

1995.12.29 농림수산부령1217 /167
1996.12.28 농림부령1246 / 180
1996.12.31 농림부령1247 / 182
1998. 6.25 농림부령1285 / 184
1999. 5.21 농림부령1328 / 187
1999.12. 7 농림부령1349 / 191
1999.12.31 농림부령1354 / 191
1999.12.31 농림부령1355 / 193
2000. 3.27 농림부령1360 / 196
2002. 4.11 농림부령1412 / 199
2002.12.31 농림부령1431 / 201
2003.10.22 농림부령1450 / 202
2003.12.15 건설교통부령382 / 203
2004.12.30 농림부령1484 / 205
2006. 1.20 농림부령1513 / 20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농 지 법</p> <p>制定 1994·12·22 法律第4817號</p> <p>改正 1995·12·29 法律第5108號(地價公示및土地 등의評價에 관한法律)</p> <p>1996· 8· 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p> <p>1997· 1·13 法律第5279號(農漁村整備法)</p> <p>1997· 8·22 法律第5371號(金融機關不實資 産등의 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 의設立에 관한法律)</p> <p>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の施 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 備에 관한法律)</p> <p>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 의 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 에 관한法律)</p> <p>1998· 9·16 法律第5555號(資産流動化에 관 한法律)</p> <p>1999· 2· 5 法律第5758號(農業·農村基本 法)</p> <p>1999· 2· 5 法律第5759號(農業基盤公社및 農地管理基金法)</p> <p>1999· 3·31 法律第5948號</p> <p>1999·12·31 法律第6073號(金融機關不實資 産등의 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 管理公社의設立에 관한法律)</p> <p>2000· 1·21 法律第6188號</p>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법 시행령</p> <p>제정 1995·12·22 대통령령제14835호</p> <p>개정 19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 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1996·12·31 대통령령제15229호</p> <p>1997· 9·11 대통령령제15480호(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p> <p>1999· 4·19 대통령령제16254호</p> <p>1999· 5·24 대통령령제16348호(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p> <p>1999·10·11 대통령령제16571호</p> <p>1999·12·28 대통령령제16646호(농업·농 촌기본법시행령)</p> <p>1999·12·28 대통령령제16647호(농업기반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p> <p>2000· 3·13 대통령령제16756호(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 행령)</p> <p>2000· 3·24 대통령령제16767호(농업협동 조합법시행령)</p> <p>2001· 9·12 대통령령제17357호</p> <p>2002· 3·30 대통령령제17560호</p> <p>2002·12·31 대통령령제17869호</p> <p>2003· 6·30 대통령령제18039호(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 률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법 시행규칙</p> <p>제정 1995·12·29 농림수산부령제1217호</p> <p>개정 1996·12·28 농림부령제1246호</p> <p>1996·12·31 농림부령제1247호</p> <p>1998· 6·25 농림부령제1285호</p> <p>1999· 5·21 농림부령제1328호</p> <p>1999·12· 7 농림부령제1349호</p> <p>1999·12·31 농림부령제1354호(농업·농촌 기본법시행규칙)</p> <p>1999·12·31 농림부령제1355호(농업기반공 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p> <p>2000· 3·27 농림부령제1360호(농업협동조 합법시행규칙)</p> <p>2002· 4·11 농림부령제1412호</p> <p>2002·12·31 농림부령제1431호</p> <p>2003·10·22 농림부령제1450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p> <p>2003·12·15 건설교통부령제382호(주택법 시행규칙)</p> <p>2004·12·30 농림부령제1484호</p> <p>2006· 1·20 농림부령제1513호</p>

2000· 1·28 法律第6241號(開發制限區域의 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2002· 1·14 法律第6597號
 2002· 2· 4 법률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18 法律第6793號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2005· 1·14 법률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 7·21 법률제7604호
 2005·12·29 법률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農地의 所有·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農業의 競爭力強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2003· 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4·24 대통령령제18377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2004· 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 8·10 대통령령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4·12·30 대통령령제18619호
 2005· 6·30 대통령령제18931호(철도건설법시행령)
 2005· 7·27 대통령령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2006· 1·20 대통령령제 19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법5758, 2002·12·18, 2005·7·21>

1. “農地”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말한다.

가. 田·畝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實際의 土地現狀이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土地. 다만, 草地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 등 大統領令이 定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생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1·20>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

나. 가목의 土地의 改良施設(溜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敷地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敷地

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6·1·20>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과 다음 各目的의 要件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삭제 <2005·7·21>

다.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자가 農業人일 것

라. 農業會社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 자의 2分の 1 이상이 農業人일 것

4. “農業經營”이라 함은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자기의 計算과 責任으로 農業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自耕”이라 함은 農業人이 그 所有 農地에서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상시 종사하거나 農作業의 2分の 1 이상을 자기의 勞動力에 의하여 耕作 또는 栽培하는 것과 農業法人이 그 所有 農地에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

- 6. “委託經營”이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他人에게 일정한 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행하는 農業經營을 말한다.
- 7. 삭제 <2002·12·18>
- 8. 삭제 <2002·12·18>
- 9. “農地의 轉用”이라 함은 農地를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 등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0>

-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6·12·31]

第3條(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①農地는 國民의 食糧供給과 國土環境保全의 기반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資源이므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權利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義務가 따른다.

②農地는 農業의 生産性を 높이는 방향으로 所有·이용되어야 하며 投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國家 등의 義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農地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施策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規制와 調整을 통하여 農地를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農業의 육성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조신설 2006·1·20]

第5條(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農地에 관한 施策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地の 所有

第6條(農地の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법 5454, 1998·9·16, 1999·2·5 법5759,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中等教育法 및 高等教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農業研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

제2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研
究·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
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
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
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
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
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
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
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
産流動化에 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
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
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
간)** 법 제6조제2항제4호·법 제7조제
2항 및 법 제22조제7호나목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
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
·20>

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1996·12·
28, 1999·5·21, 2006·1·20>

**제5조(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쓰
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중등교
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
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
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
아야 한다. <개정 1996·12·28, 1999·
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的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農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2002·12·31>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정 1999·12·7, 2002·12·31>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 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規定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6. 삭제 <2002·4·11>

③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第43條](#)·[第56條](#)·[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 <1999·2·5 법5759>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公營事業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 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規定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⑤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신설 1999·5·21, 개정 2006·1·20>

2002·12·18, 2005·7·21>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

제6조(농지소유상한의 예외) 삭제
<2002·12·31>

제6조(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 인정신청) 삭제 <1999·12·7>

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전문개정 2002·12·18]

第8條(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農

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邑長 또는 面長(이하 “市·區·邑·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第5號·第7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2. 農業法人의 合併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3. 共有農地의 分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2.12.31>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取得對象農地의 면적
2. 取得對象農地의 農業經營에 적합한 勞動力 및 農業機械·裝備의 확보방안
3. 所有農地의 이용실태(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④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제8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 삭제

<2002·12·31>

제9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삭제

<2002·12·31>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삭제 <2002·12·31>

②삭제 <2002·12·31>

③영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農地를 취득하는 者가 그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農地取得 資格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삭제 <2002.12.31>

⑤삭제 <2002.12.31>

⑥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9.5.21, 2002.12.3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⑦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第9條(農地の 委託經營) 農地の 所有者
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有農地를 委託經營할
수 없다. <개정 1999·3·31>

1. 兵役法에 의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경우
2. 3月 이상의 國外旅行 중인 경우
3. 農業法人이 清算 중인 경우
4. 疾病, 就學, 選舉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自
耕할 수 없는 경우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
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委託經營
하는 경우
6. 農業人이 自己勞動力이 부족한 경
우에 農作業의 일부를 委託하는 경
우

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
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에 수용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
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숙기, 재배관리 및 수확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第10條(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 등의 처분) ①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年 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14, 2002·12·18, 2005·7·21>

1. 所有農地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제11조·제11조의2·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2.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農業會社法人이 第2條第3號 各目的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그 農地를 당해 目的事業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規定에

제11조의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0>

1. 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第6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취득한 날부터 2年 이내에 그 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 所有한 것이 判명된 때

6.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農地를 所有한 것이 判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計劃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農地의 處分義務가 생긴 農地의 所有者에게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分對象農地・處分義務期間 등을 명시하여 해당農地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第11條(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義務期間내에 處分對象農地를 처분하지 아니한 農地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6月 이내에 당해 農地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農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3·30]

제12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관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한국농촌공사에게 당해 農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9·2·5 법57595>

③한국농촌공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公示地價(당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農地를 買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實際去來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實際去來價格을 기준으로 買收할 수 있다. <개정 1999·2·5 법 5759, 2005·1·14>

④한국농촌공사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買收하는데 필요한 資金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서 이를 融資한다. <개정 1999·2·5 법5759>

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통령 16647>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1]

第12條(擔保農地의 취득) ①農地의 抵當權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抵當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期日을 2回 이상 進行하여도 競落人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競賣에 응하여 그 擔保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9·16, 1999·2·5 법5759, 1999·12·31, 2002·1·14, 2002·12·18>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3.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

제13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효율적 처리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 5.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 등
-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抵當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農地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법5759>

타 金融기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金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4.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14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한 동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령16647>

②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 1.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 2.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대령16647>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대령166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6·8·8>

4. 당해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第3章 農地の 이용

第1節 農地の 利用増進 등

第13條(農地利用計劃의 수립)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그 관할 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の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住民의 의견을 들은 후 [農業·農村基本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5조(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제

2. 수수료

-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議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農地의 綜合的인 이용에 관한 計劃(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법 5758, 2002·1·14>

②農地利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地의 地帶別·用途別 利用計劃
2.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과 農業經營의 개선을 위한 經營規模擴大計劃
3. 農地의 農業외 用途로의 活用計劃

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農地이용계획안의 개요
4.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공청회는 農地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③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計劃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告示하여야 하며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법5454>

④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이 확정된

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때에는 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 또는 開發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投資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農地利用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第14條(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市長·郡守·自治區區廳長, 한국농촌공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4, 2002·12·31>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을 增進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개정 1999·2·5 법5759>

1. 農地의 賣買·交換·分合등에 의한 農地의 所有權移轉促進事業
2. 農地의 長期貸借·長期使用貸借에 의한 農地의 賃借權(使用貸借에 의한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定促進事業
3. 委託經營促進事業
4.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農地의 공동이용 또는 集團利用을 통하여 農業經營을 개선하는 農業經營體育成事業

第15條(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農地利用增進事業은 다음 各號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農業經營 目的으로 農地를 이용할 것
2. 農地의 賃借權의 設定 또는 所有權

말한다. <개정 1999·4·19, 2000·3·2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삭제 <2000·3·24>
3. 「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연초생산협동조합
4. 삭제 <2000·3·24>
5. 삭제 <1999·12·28 대령16647>
6.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의 移轉이나 農業經營의 受委託이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經營규모의 擴大 또는 農地利用의 集團化에 기여할 것

3. 機械化·施設自動化등을 통하여 農産物의 生産·流通을 포함한 農業經營費用의 절감등 農業經營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第16條(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9·3·31, 2002·1·14>

②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외의 事業施行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市長·郡守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③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補完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事業施行者에게 同計劃의 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④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8·8>

1.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區域
2.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者, 賃借權을 設定받을 者, 所有權을 移轉받을 者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할 者에 관한 사항
3. 賃借權이 設定되는 農地, 所有權이 移轉되는 農地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하는 農地에 관한 사항
4. 設定하는 賃借權의 내용, 農業經營受委託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所有權의 移轉時期, 移轉의 代價

②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농

및 그 지불방법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⑤삭제 <1999.3.31>

第17條(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告示 및 효력)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確定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 計劃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관계인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②事業施行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増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増進事業施行計劃에 포함된 第16條第4項第2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農地에 관한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事業施行者が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囑託하는 경우에는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増進事業施行計劃을 확정한 文書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増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文書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書를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본다. <개정 1999·3·31>

④農地利用増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한

제19조(등기의 촉탁) 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12·7>

1. 법 제1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確정한 文書(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告示된 文書(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한다)

登記의 囑託에 대하여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8條(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助成을 하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19條(代理耕作자의 지정등) ①市 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遊休農地(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 갈음하여 農作物을 耕作할 者(이하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19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96.8.8>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6·1·2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耕作者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代理耕作者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代理耕作者와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指定通知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代理耕作期間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年으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밖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6.1.20>

제22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의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관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1999·10·11>

④代理耕作者는 收穫量의 100分의 10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土地使用料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領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供託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있다. <개정 1999·12·7>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①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당

⑤代理耕作農地の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당해 農地를 스스로 耕作하고자 할 때에는 第3項의 代理耕作期間 만료 3月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代理耕作者 指定을 중지할 것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하며, 申請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請을 받은 날부터 1月 이내에 代理耕作者의 指定중지를 代理耕作者와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代理耕

해 農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作物의 경우에는 2등급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농지의 所有權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代理耕作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作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正當한 사유를 疎明하여 그 指定을 解止할 것을 申請하거나 代理耕作 者가 耕作을 계을리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正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代理耕作期間 만료전에 代理耕作 者의 指定을 解止할 수 있다.

⑦삭제 <1999·3·31>

第20條(土壤의 개량·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環境保全的인 農業經營을 지속 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施行, 土壤의 개량·보전에 관한 試驗·研究·調査 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 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서 “기타 大統領令이 正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당해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 農林部 令이 정하는 農業生産者團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第21條(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贈與 또는 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8·6·25, 2000·3·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삭제 <2000·3·27>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삭제 <2000·3·27>
5. 삭제 <1999·12·31 농림부령135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제24조의2(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

第2節 農地의 賃貸借 등

第22條(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5·7·21>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3. 疾病, 徵集, 就學, 選舉에 의한 公職 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 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제25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大統領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9>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
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
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
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
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第23條(賃貸借 또는 使用賃借契約의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또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대차(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第24條(賃貸借의 기간) 삭제 <1999·3·31>

第25條(賃借料의 上限) 삭제 <1999·3·31>

第26條(默示의 更新) 賃貸人이 賃貸借 期間 만료 3月前까지 賃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賃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第27條(契約解止의 제한) 삭제 <1999·3·31>

제26조(임대차 연장기간의 특례) 삭제 <1999·10·11>

제27조(임차료의 상한) 삭제 <1999·10·11>

제28조(임차료의 지급) 삭제 <1999·10·11>

제29조(공과금등의 부담) 삭제 <1999·10·11>

제30조(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삭제 <1999·10·11>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제22조(임차료의 상한조정 등) 삭제 <1999·12·7>

第28條(賃貸人의 地位承繼) 賃貸農地의 讓受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第29條(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에 의한 國·公有財産인 農地에 대하여는 第23條·第26條 및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第4章 農地의 보전 등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지정·運用

第30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은 다음 各號의 用途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農業振興區域 : 農業의 振興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제30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 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당하는 地域으로서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규모로 農地가 集團化되어 農業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地域

가. 農地造成事業 또는 農業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되었거나 施行 중인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나. 가목에 해당하는 地域외의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2. 農業保護區域 : 農業振興區域의 用水源確保, 水質保全 등 農業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32條(農業振興地域の 지정절차) ①
市·道知事は [農業·農村基本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0]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조신설 2006·1·20]

제22조의2(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6·1·20]

어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개정 1996·8·8, 1999·2·5 법5758, 2002·1·14>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農業振興地域에 포함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 指定를 승인하기 전에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2·13 법5454, 2002·1·14, 2002·12·18>

④農業振興地域의 指定節次 기타 指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0>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사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2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0>

1. 지정 또는 변경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第33條(農業振興地域 등의 변경·해제)

①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農業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2·3·30, 2002·12·31, 2006·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삭제 <1999.4.19>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30, 2006·1·20>

1.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

第34條(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農業振興區域안에서는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水産物(農産物·林産物·畜産物·水産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加工·處理施設 및 農水産業(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試驗·研究施設의 設置

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9>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1999·4·19, 1999·10·11, 2002·3·30, 2006·1·2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

2. 어린이놀이터·마을會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의 共同生活의 便益을 위한 施設 및 利用施設의 設置

3. 農業人住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用 또는 畜産業用 施設의 設置

협·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2006·1·20>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置

4. 國防·軍事施設의 設置
5. 河川, 堤防 기타 이에 준하는 國土
保存施設의 設置
6. 文化財의 補修·復元·移轉 또는
埋藏文化財의 發掘, 비석·記念塔
기타 이와 유사한 工作物의 設置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1999·4·19, 2002·3·3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1999·4·1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1>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7. 道路·鐵道·電氣供給設備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8. 地下資源의 개발을 위한 探查 및 地下鑛物의 採鑛과 鑛石의 選別 및 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農漁村所得源의 개발등 農漁村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우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8·8, 1999·4·19, 2006·1·20>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임대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자(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제24조(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7항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바목·아목·자목에 해당하

③農業振興地域の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申告하고 設置한 기존의 建築物・工作物 기타 施設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農業振興地域の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 기타 施設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認可・許可・승인 등을 얻거나 申告하고 사업을 施行 중에 있는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 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工事 또는 사업에 한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

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02.3.30, 2006.1.20]

한다.

第35條(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 및 農業施設의 개량·整備와 農漁村 道路·農產物流通施設의 확충 기타 農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投資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에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租稅의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36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당해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대통령령16646, 2004·4·24>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 기타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第2節 農地의 轉用

第36條(農地의 轉用許可·協議)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農地의 면적 또는 境界 등 大統領령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 第2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제2절 農地의 轉用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제2절 農地의 轉用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 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2·4·11, 2002·12·31, 2004·12·30, 2006·1·20>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 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 · [제15조](#)의 規定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 로 복구하는 경우
5. 河川法에 의하여 河川管理廳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農地를 形質變更하 거나 工作物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 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 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 4항의 規定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 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 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 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 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 이 영 제7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 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 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 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 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 표 2제10호의2·제25호의2·제28 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4.19, 2002.3.30, 개정 2006.1.20>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제3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1999·10·11, 2006·1·20>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1.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②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농지전용허가) ①농림부장관이 나 영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나.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다.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라.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마.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

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4, 2002·4·11, 2006·1·20>

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②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과 미리 農地의 轉用에 관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8, 2002·1·14,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 또는 都市計劃施設을 지정 또는 決定할 때에 당해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에 農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을 다른 地域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에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

서류의 흙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9·5·21, 2006·1·20>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4·19, 2002·3·30, 2002·12·31, 2003·6·30, 2006·1·20>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만, 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할청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第37條(農地의 轉用申告) ①農地를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農業人住宅, 農業用施設, 農水産物 流通·加工施設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農業人

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제37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38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한다.

④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4·12·30>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의 共同生活 便益施設

3. 農水産關聯 研究施設과 養魚場·養殖場 등 漁業用施設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7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삭제 <2004.12.30>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999.10.11>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設置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第38條(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등) ①農地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農地로 復舊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1·14>

1.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對象施設이 아닌 簡易農業用施設과 農水産物의 簡易處理施設을 設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3·30>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3. 삭제 <2006·1·20>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

置하는 경우

2. 主目的事業(당해 農地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現場事務所 또는 附帶施設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을 設置하거나 물건을 積置・埋設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

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9, 1999·10·11, 2002·3·30, 2006·1·20>

1. 법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 3의2.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발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1]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
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
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1996.8.8, 2002.3.30>

**제4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
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石 및 鑛物을
採掘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10·11, 개정 2002·3·30, 2002·12·31>

③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19>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이 다른 法律에 의한 사업 또는 事業 計劃 등의 認可·許可 또는 승인 등 과 관련하여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 의 協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認可·許可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 해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農地를 사용한 후 農地로 復舊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協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 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4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20>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農地로의 復舊計劃을 제출하게 하고 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5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復舊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

제46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8조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상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2·12·31>

제47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군수등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3·30>

②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 그 밖에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8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당해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35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第39條(農地轉用許可 등의 제한) ①農林部長官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國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農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轉用을 許可할 수 없다. <개정 1996·8·8, 2002·12·18, 2005·3·31>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2006·1·20>

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로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施設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
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
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
19, 2001·9·12, 2002·12·31, 2004·8·
10>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3. 農業의 振興이나 農地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

제35조의2(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0>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본조신설 1999.5.21]

31, 1999·4·19, 1999·10·11, 2002·12·31, 2005·7·27, 2006·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차목](#),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카목·타목](#), [제5호가목](#), [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協議(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및 協議를 함에 있어서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1.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가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 施行豫定地域으로 편

를」 제3조의 規定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신설 1999·4·19, 개정 2006·1·20>

⑤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입되어 優良農地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이 日照·通風·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招來하거나 農地改良施設의 廢止를 隨伴하여 인근 農地의 農業經營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에 따르는 土沙의 流出등으로 인근 農地 또는 農地改良施設을 損壞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轉用目的의 實現을 위한 事業計劃 및 資金調達計劃이 불확실한 경우
5. 轉用하고자 하는 면적이 轉用目的 實現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第40條(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 轉用許可를 받는 者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신설 1999.4.19>

⑥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規定에 의한 變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999.4.19>

제50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規定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2. 第3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의 農地(同條同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3. 第3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5.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그 납입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령16646, 2002·3·30>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51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3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5·21, 1999·12·7, 2002·4·11, 2006·1·2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0>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 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부장관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기타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공급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에 한한다)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7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6·12·31, 2002·4·11, 2002·12·31>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6·1·20>

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제53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2.3.30>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12.28 대통령

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

16646, 2002.3.30>

제54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령16646>

②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대령16646>

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1]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한국농촌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②한국농촌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③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 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부담금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농림부령1355>

④삭제 <1996·12·31>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 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1999·12·7>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

⑤ 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통령령 16646, 2002.3.30>

⑥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⑦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

1355>

③ 삭제 <1999.12.7>

④ 삭제 <1999.12.7>

제41조(독촉장 등) ①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청 및 한국농촌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제42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대통령령16646>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제5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삭제 <1996·12·31>

⑤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농림부령1355>

제43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05·7·21>

- 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06·1·20>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4·1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06·1·20>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개정 2005·7·21>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20>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④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는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이에 准하는 사유로 인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相当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還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3·30]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령16646, 2001·9·12, 2002·3·30>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12>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

45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농림부령1355>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⑤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7·21>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的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3. 第3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28 대통령16646>

제57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3·30>

제44조의2(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 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02·4·11, 2002·12·31, 2003·10·22, 2003·12·15, 2006·1·20>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

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1>

⑦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内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5·7·21>

⑧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제57조의2(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0]

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44조의3(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통지) 관할청이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 2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하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1>

1.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채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57조의3(결손처분 등) ①법 제40조 제8항제4호에서 “채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자가 사망한 때
2. 채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0]

⑨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05.7.21>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개정 2005.7.21>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을 하거나 법 제4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0]

제57조의4(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0>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①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0>

[본조신설 2002·3·30]

제58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당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1996·12·28, 2002·4·11>
②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2·4·11>

第41條(轉用許可의 取消등)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았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工事의 중지, 操業의 停止, 事業규모의 축소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5·7·2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許可의 目的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없이 事業計劃 또는 事業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후 농지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30]

제58조의2(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①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 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④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年이상 垡地의 造成, 施設物의 設置등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한 후 1年이상 工事を 중단한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
5.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 許可의 取消를 申請하거나 申告를 撤回하는 경우
6. 許可를 받은 者가 關係工事의 중지등 이 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41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2.3.30]

제59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第42條(用途變更의 승인) ①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7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自治區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농지보전부담금이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농지보전부담금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③법 제42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4·19, 개정 2001·9·12, 2004·8·10, 2006·1·20>

1. 삭제 <2002·3·30>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4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삭제 <2004·12·30>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토지에 대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4.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19>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력에 관하여는 영 제37조제4항 및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3條(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農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田·畓·果樹園외의 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2.1.

14>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 다)를 받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轉用한 경우
2. 第36條第1項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한 경우
3.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4. [農漁村整備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規定에 의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 나목의 規定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農地의 形質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原狀回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44條(原狀回復등) ①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他用途로 사용한 경우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3.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경우
4.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경우

②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하여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45條(農地轉用許可의 特例) 第3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의 農地를 國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土地利用行爲에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61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 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9·11, 2002·12·31>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 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06·1·20>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삭제 <2006·1·20>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 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 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3節 農地管理委員會 등

第46條(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①農地 및 그 賃貸借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此 節에서 같다)·區(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此 節에서 같다)·邑 또는 面에 각각 農地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該 管轄區域안에 農地가 없는 市·區·邑 또는 面의 경우에는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地域의 特性과 農地 分布의 實態를 參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 이상의 市·區·邑 또는 面에 하나의 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第47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40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개정 1996·8·8, 1997·12·13 법 5454, 1999·2·5 법5759, 2002·1·14>

1. 管轄 市·區·邑·面長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정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2. 관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郡守가 委員會의 管轄區域인 市·區·邑 또는 面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 중에서 위촉하는 5人 이상 30人 이하의 者

3. 관할 市·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關聯機關 및 團體의 長이 추천하는 그 任職員중 각 1人

③委員長은 관할 市·區·邑·面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第46條第2項의 경우에는 관할農地의 면적이 많은 市·區·邑·面長이 委員長이 된다.

④委員長은 第4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長을 포함한 5人 이내의 小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議決은 이를 委員會의

제49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②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③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5·24>

1. 삭제 <1999·5·24>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3. 삭제 <1999·12·28 대령16646>

議決로 본다.

⑤委員의 任期·選任·解任과 委員會의 組織·會議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48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
의 調査等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
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에 관한 諮問
3. 삭제 <1999.3.31>
4.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
用許可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
地轉用申告에 관한 확인
5. 기타 農地의 관리에 관하여 大統領
令이 정하는 사항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 의 기능) ①법 제48조제
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28 대령16646>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
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협약에 관한 확인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

第49條(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第50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農地原簿의 작성비치) ①市·區·邑·面長은 農地의 所有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原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市·區·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

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시(구를 두지 아니한

에 의한 農地原簿를 작성·정리하거나 農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農地原簿에 기재할 사항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農地原簿화일(磁氣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로 본다.

⑤農地原簿의 書式·작성·관리와 電算情報處理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6·1·2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第52條(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等의 교부) ①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제52조(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

①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12.28>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

는 바에 의하여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市·區·邑·面長은 自耕하고 있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耕證明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第5章 補則

第53條(權限의 위임·委託등) ①이 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農業關聯機關 또는 農業關聯團體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2·5 법5759>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05·7·

제5장 보칙

제7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1999·10·11, 2002·3·30, 2002·12·31, 2004·6·29, 2004·12·30, 2006·1·20>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1999·5·21>

제5장 보칙

제54조의2(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화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본조신설 2006.1.20]

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6. 삭제 <1999·10·11>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

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2002·3·30, 2002·12·31, 2004·6·29, 2004·12·30, 2006·1·20>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삭제 <2002.3.30>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第54條(褒賞金) 農林部長官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主務官廳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

제55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제56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나 搜查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者
2.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4.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5.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他用途로 사용한 者

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③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6.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第55條(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特例) ①1필지의 土地가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경우에 農業振興區域에 속하는 土地部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農業保護區域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1필지의 土地중 일부가 農業振興地域에 걸치는 경우로서 農業振興地域에 속하는 土地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 第3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6條(農地の 所有등에 관한 調査)

①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業法人, 農地の 委託經營者, 農地の 賃貸人, 農地の 使用貸

다. <개정 1996.12.28>

제74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 면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主, 農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 또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의 事業施行者의 農地의 所有·去來·이용 또는 轉用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 또는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업무를 檢査 또는 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調査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3·31>

제57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의무 발생의 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제57조(증표)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청문) 삭제 <1998·6·25>

취소

[전문개정 2002·1·14]

第58條(手數料)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 第36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는 者,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의 轉用 申告를 하는 者,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原簿 謄本 또는 自耕證明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75조(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11, 2002·3·30, 2002·12·3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의 신청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당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第6章 罰則

第59條(罰則) ①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當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에 의한 土地價額(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29>

②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當해 土地價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6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他用途로 사용한 者
3.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第6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者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第6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14>

1.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

를 委託經營한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한 者

第63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關하여 第59條 내지 第6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4條(過怠料) 삭제 <1999.3.31>

第65條(履行强制金)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處分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의 土地價額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개정 2002.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1999.10·11>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5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定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의 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제59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 77조의 規定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關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

1·14, 2005·7·21>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賦課하기 전에 履行强制金を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の 金額,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受納機關, 異議提起方法,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최초의 處分命令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處分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매년 1회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제11조 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者가 處分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の 賦課는 즉시 中止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1. 법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전문개정 1999·10·11]

20>

[전문개정 1999·12·7]

<개정 2005·7·21>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の 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は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の 賦課處分을 받은 者が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 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에 준하여 裁判을 한다. <신설 2000·1·21>

⑧第6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신설 2000·1·21>

제78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

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0·11>

1. 법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대령16646>

부 칙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6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地改革法
2.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
3. 農地の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4. 農地賃貸借管理法
5. 地力增進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농지위원회규정
3. 수복지구에 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특례에 관한건
4. 농지대가상환체납금징수규정
5.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7.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第3條(分配農地의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改革法 및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分配農地에 대한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第4條(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거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設置한 第2條第1號 나目的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기존 農地所有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農地를 所有하

8. 지력증진법시행령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농지대가상환채납금징수규정·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관상수재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

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6條第1項·第10條·第11條·第22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당해 所有農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처분하여야 하는 者가 처분하지 아니한 處分對象農地에 대한 處分期限 및 協議買受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農地를 계속 所有할 수 있다.

第6條(賃借料上限등에 관한 條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賃貸借管理法에 의한 賃借料上限등에 관한 市(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郡의 條例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본다.

第7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

령에 의한 農地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2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단서”를 “농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3 본문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된 農業振興地域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8條(農地轉用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와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는 이 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 또는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거나 農地轉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 保全 및利用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치거나 同意·승인을 얻은 農地는 이 법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당시 都市計画法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안의 農地 및 都市計劃施設의 豫定地로 決定된 農地로서 종전의 農地의 保全 및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제52조의4제2항중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를”을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2의 規定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단서·제4항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規定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8 (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利用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農地는 이 法 第3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第9條(農地造成費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 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과 종전의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새로이 開發하는데 필요한 金額을 納入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 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과 종전의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새로이 開發하는데 필요한 金額의 納入告知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造成費의 納入告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 법 제45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52조의3·제52조의4·제5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

③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 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의 農地別 單位當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施行이후 農地의保全 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981年 7月 29日 이전에 協議를 거쳐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안의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에는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農地賣買證明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 및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賣買證明을 발급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農地管理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賃貸借管理法에 의한 農地管理委員會

정한 農地의 규모등의 기준에 따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 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農地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農地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그 委員은 이 法에 의한 農地管理 委員會 및 그 委員으로 본다.

第12條(農地原簿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는 이 法에 의한 農地原簿로 본다.

第13條(중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農地 賃貸借管理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附則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の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4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

및 第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주택건설가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規定

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の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の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の 規定에 의한 다.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章의 題名을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投資財源등”으로 한다.

第40條 내지 第43條, 第43條의2 내지 第43條의4, 第44條·第45條, 第47條, 第69條의2, 第75條, 第75條의2, 第76條 第1號 및 第78條 第1項 第1號·第2號를 削除하며 第77條중 “第75條 내지”를 削除한다.

第45條의2 第1項 第1號중 “農地の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 第4項”을 “農地法 第40條 第1項”으로 하고, 同條 第6項을 第7項으로 하며, 同條 第5項중 “農地の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19條”를 “農地法 第53條”로 하여 同項을 第6項

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

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5項”을 “第6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の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の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상 당하는 轉用負擔金を 납부하여야 한다.

第67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の 許可

②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중 “農地の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을 “農地法”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專業農家로 육성하고 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를 “專業農家로 육성하고

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 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

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地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2項 및 第3項중 “專業農育成對象者”를 각각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5條第3項중 “專業農育成對象者 또는 營農組合法人”을 “專業農育成對象者 또는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28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納入金

第31條第1項중 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第8號 및 第9號로 하고, 同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의 還給 및 同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褒賞金의 지급

第3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公社가 第13條·第15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農地法 第9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

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規定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니한다.

第47條第1項중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5條”를 “農地法 第46條”로 한다.

③特定多目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4第1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④農藥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을 削除한다.

⑤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각각 “農地法”으로 한다.

⑥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⑦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規定에

第23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⑧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6號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를 “農地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⑨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 但書중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擔保財産이 農地인 경우에도 農地改革法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 後段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耕 또는 自營하는 農家나 自耕하고자 하는 者”를 “農地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으로 한다.

의한 公營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자원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第16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農地賃貸借管理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또는 地力增進法의 規定을 인용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の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1995·12·29, 법510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⑤省略

⑥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⑦ 내지 ⑩省略

附 則 <1996·8·8, 법515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 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8·8, 대령151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2·28, 농림부령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②省略

③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第1號, 第32條第1項·第3項, 第33條第2項 但書, 第36條第1項 本文·第2項 本文, 第3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39條第1項 本文·第2項 本文, 第40條第3項 本文·第4項, 第41條 本文, 第44條第1項 本文·第2項, 第46條第2項, 第53條, 第54條 本文, 第56條 第1項, 第57條 本文 및 第64條第3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1號 目, 第6條第2項第2號, 第10條第2項, 第13條第5項, 第16條第1項·第2項·第4項第5號, 第17條第1項, 第19條第2項·第4項·第5項, 第20條第2項, 第41條 本文, 第47條第2項第2號, 第51條第5項, 第52條, 第56條第3項 및 第57條 本文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0조제6호, 제24조제1항제2호·제5호, 동조제2항제2호, 제27조제2호, 제31조 본문·제4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

㉔ 내지 ㉙省略

第4條 省略

附 則 <1997.1.13, 법527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8號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農地”를 “1千500제곱미터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로 한다.

附 則 <1997.8.22, 법제5371호>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 내지 ⑥省略

항·제2항제2호가목, 제12조, 제14조 제1항·제4항, 제19조, 제34조제5항제4호·제7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항, 제55조, 제58조, 제61조제2항·제3항, 제72조제3항·제4항,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제5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㉕ 내지 ㉞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1996.12.31, 대령15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

부 칙 <1996.12.31, 농림부령1247>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 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成業公社

⑧省略

附 則 <1997·12·13, 법545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1997·12·13, 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1998·9·16, 법555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

례) 別표 2 제8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

行한다.

②(農地法の改正)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2條第1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

附 則 <1999·2·5, 법575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 생략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9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50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1997·9·11, 대령154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②생략

부 칙 <1998·6·25, 농림부령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과 다음 各目的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 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과 다음 各目的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2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⑨ 내지 ⑲생략

第11條 생략

附 則 <1999·2·5, 법575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6條 생략

第1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第8號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21條第2項의 規定
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
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으
로 하고, 同項第9號 目중 “農漁村振
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
漁村振興公社가”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
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
가”로 하며, 同項同號 目을 削除한다.

第11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
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에
게”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 게”로 하고, 同
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
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4項중 “農漁

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第12條 第1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2項 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2. 農業基盤公社

第14條 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7條 第2項 第3號 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3條 第2項 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第18條 생략

附 則 <1999.3.31, 법594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99.4.19, 대령162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37호의 개정

부 칙 <1999.5.21, 농림부령1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3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면적은

례) 별표 2 제60호·제61호·제94호 내지 제99호 및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용도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15호의2·제15호의3·제

18호·제25호·제36호 및 제3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10제1항중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
 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
 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
 전용부담금의 납입금은 부칙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附 則 <1999.12.31, 법607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생
 략
 ④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부 칙 <1999.5.24, 대령163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
 략
 ③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

부 칙 <1999.12.7, 농림부령1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효율적 처리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⑤ 내지 ⑫ 생략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1999.10.11, 대령16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9호·제9호의2·제16호·제28호의2·제34호의2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2.28, 대령166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④ 생략

⑤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3)의 납입자 보관용 뒤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도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제50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1)의 납입자 보관용 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납입자 보관용 뒷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1999.12.31, 농림부령13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

별표 2의 시설구분란 제12호 및 제3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란 제15호 및 제18호중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를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로 하며, 동란 제25호 및 제28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1999.12.28, 대령16647>

다.

3. 관할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1), 별지 제36호서식(2), 별지 제36호서식(4), 별지 제36호서식(5),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3),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7항 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附 則 <2000·1·21, 법6188>

부 칙 <2000·3·13, 대령16756>

부 칙 <2000·3·27, 농림부령1360>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1·28, 법624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第2號중 “都市計画法 第4條”를 “都市計画法 第46條第1項 또는 開發制限區域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特別 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로 한다.

②省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 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 내지 ①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00·3·24, 대령167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 및 ⑤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⑧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2001·9·12, 대통령령173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4 및 제
3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
일까지, 동표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5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농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제38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1.14, 법659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분할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협의의 요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부 칙 <2002.3.30, 대령1756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2·제9호의3·제12호·제14호·제15호·제26호·제30호 및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부 칙 <2002.4.11, 농림부령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2.4, 법66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公共用地의 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허가 또는 협의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⑰ 내지 ⑮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2002.12.18, 법6793>

-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2.12.31, 대령1786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②(유효기간) 별표 2 제25호의2·제28호 나목·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2.12.31, 농림부령14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12.30, 법68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 “山林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⑬(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9호·제9호의4·제10호의2·제14호의2·제16호·제25호·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29호·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6.30, 대령18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2003.10.22, 농림부령14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생략

㉓ 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2005.1.14, 법73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
등의評價에 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
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로, “同法 第
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 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2005.3.31, 법7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부 칙 <2003.9.29, 대령1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
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 내지 ㉔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24, 대령18377>

부 칙 <2003.12.15, 건설교통부령
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 내지 ㉔생략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農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 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 <2004.6.29, 대령18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04.8.10, 대령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생략

부 칙 <2004.12.30, 대령18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 칙 <2004.12.30, 농림부령1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에 관한

별표 2 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간에 의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 내지 ⑧생략

부 칙 <2005·7·27, 대령18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

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 칙 <2005·7·21, 법76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 칙 <2006·1·20, 대령192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제15호의3·제26호의2·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 및 제3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

부 칙 <2006·1·20, 농림부령1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조성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동규정중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를 “1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農地造成費納入金”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
34조제1항제7호중 “農地造成費”를 “농
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都市開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
담금”으로 한다.

⑥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제출서류란 제6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가목중 “10만제곱미
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
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小企業 및 小商工人 지원을 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農地造成費”를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代替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⑭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⑯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⑰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

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①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 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조성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
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
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
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
인에 관한 협의



농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2.12.13, 2006.1.20>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41조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제3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제3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시설	제3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3만제곱미터 이하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제한없음	제한없음

<p>시설</p> <p>가.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p> <p>나. 창고 · 작업장 · 농기계수리시설 · 퇴비장</p> <p>다. 경로당 · 보육시설 ·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p> <p>라. 목욕탕 · 구관장 · 운동시설 · 마을공동주차장 · 마을공동취수장 ·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p>			<p>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p>	<p>및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p> <p>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p>	<p>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이하</p>
<p>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p>	<p>비영리법인</p>	<p>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하</p>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p>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p>	<p>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p>	<p>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이하</p>			

【별표 2】 <개정 2005·6·30, 2006·1·20>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관련)

(단위 : 퍼센트)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 역 안	농업진흥 지 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2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100	100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방·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8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	0	10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9의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9의3.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용지	100	100
9의4.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0	100

<p>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p>			<p>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효력상실》</p>	<p>여는 50으로 한다)</p>	
<p>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p>	<p>100</p>	<p>100</p>		<p>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p>	<p>50</p>	<p>100</p>
<p>15의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p>100</p>	<p>100</p>		<p>17.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p> <p>18.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50</p> <p>100</p> <p>50</p> <p>(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한다)</p>	<p>100</p> <p>100</p> <p>100</p>
<p>15의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p>	<p>100</p> <p>(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p>	<p>100</p>		<p>19.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50</p> <p>(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한다)</p>	<p>100</p>
<p>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p>				<p>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p>	<p>50</p>	<p>100</p>

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효력상실>>	0	5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2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50	5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6의2. 식물원의 부대시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상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2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 이하	100	100	28.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p>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p>	0	100				
<p>《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p>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p>		
<p>28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50	50		<p>30의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0	50
<p>29.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p>	50	50		<p>30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0	50
<p>3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p>	50	50		<p>30의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p>	0	50

<p>《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p>30의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p> <p>《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p>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p> <p>32. 농업기계수리시설</p> <p>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p> <p>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p>	0	50	<p>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36. 삭제 <2001.9.12></p> <p>36의2.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물유통 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p>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p> <p>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p> <p>《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p>37.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50	50
	50	50		0	100
	0	50		0	50
	0	50		0	100
	0	50		0	100

<p>37의2.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체험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0	50
<p>38.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계획중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0	100
<p>39.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효력 상실≫</p>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비 고

1.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본다.
2.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text{전체 농지전용면적} \times \frac{\text{당해 시설의 바닥면적}}{\text{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73조제1항 관련)

신고 또는 고발사항	근거법 조 문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제54조 제3항	50만원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제54조 제4항	10만원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제54조 제4항	50만원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법제54조 제5항	30만원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제54조 제6항	3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법제54조 제2항	30만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제54조 제1항	10만원

【별표 4】 <신설 2006·1·22>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등의 범위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나목 관련)

근 거 법 률	지 역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단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밖에 한한다)
7. 「도시개발법」 제2조·제8조	도시개발구역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10.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신설 2006·1·20>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3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1. 공 통 사 항	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객 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 토	가.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4. 절 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별표 2】 <개정 2002·12·31, 2006·1·20>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제4조 관련)

구 분	범 위
공 공 단 체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삭제>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6.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7.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 <삭제>

【별표 3】 <개정 2002.12.31, 2006.1.20>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 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시설 포함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농업연구기관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삭제>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6. 신발제조시설	1930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 시설 포함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 시설	24393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 체 제조시설 포함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시설	24394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 체 제조시설 포함	32. 그 밖에 분류안된 화학 제품 제조시설	24399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 제제 제조시설 포함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2431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 제조시설 포함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시설	24391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7221					기용구,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43. 금속 주조시설	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시설	3130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제외
46. 축전지 및 1차전지 제조시설	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 시설	3150			53. 세탁시설(용적 2m ³ 이상 또는 용수 1m ³ /시간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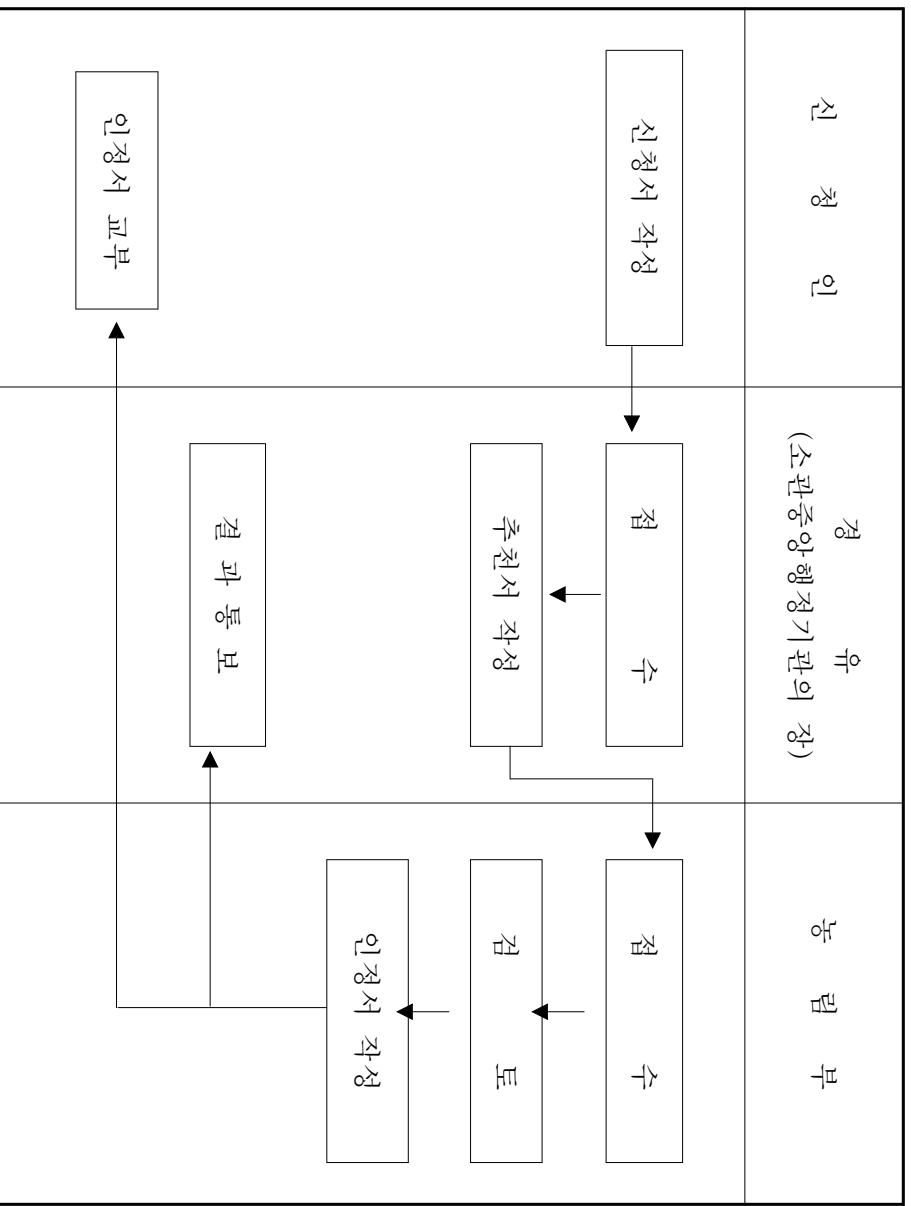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m³/시간 이상)	공통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m² 이상)	공통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56. 도금시설	공통 시설	-실험생산시설 포함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p>-「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p> <p>-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p>
<p>제10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제 호

농 지 취 득 인 정 서

1. 성 명
(명 칭)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4. 취 득 농 지

시·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	/		

5. 취 득 목 적
6. 취 득 조 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 기재한 농지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부 장 관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취 리 기 간		접 수 *	. .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취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시 도	시·군 읍·면 리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⑩농 지 구 분		
취 득 농지의 표 시	⑦소 재 지					
	시·군	구·읍·면	리·동	⑧ 지 번	⑨ 지 목	⑩ 면 적 (㎡)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진 흥 구 역
						진 흥 구 역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 등 용	주 체 영 농	말 험 농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 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 란은 범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 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범인은 범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③ 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청예정농업인”
-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범인은 “법인등”
-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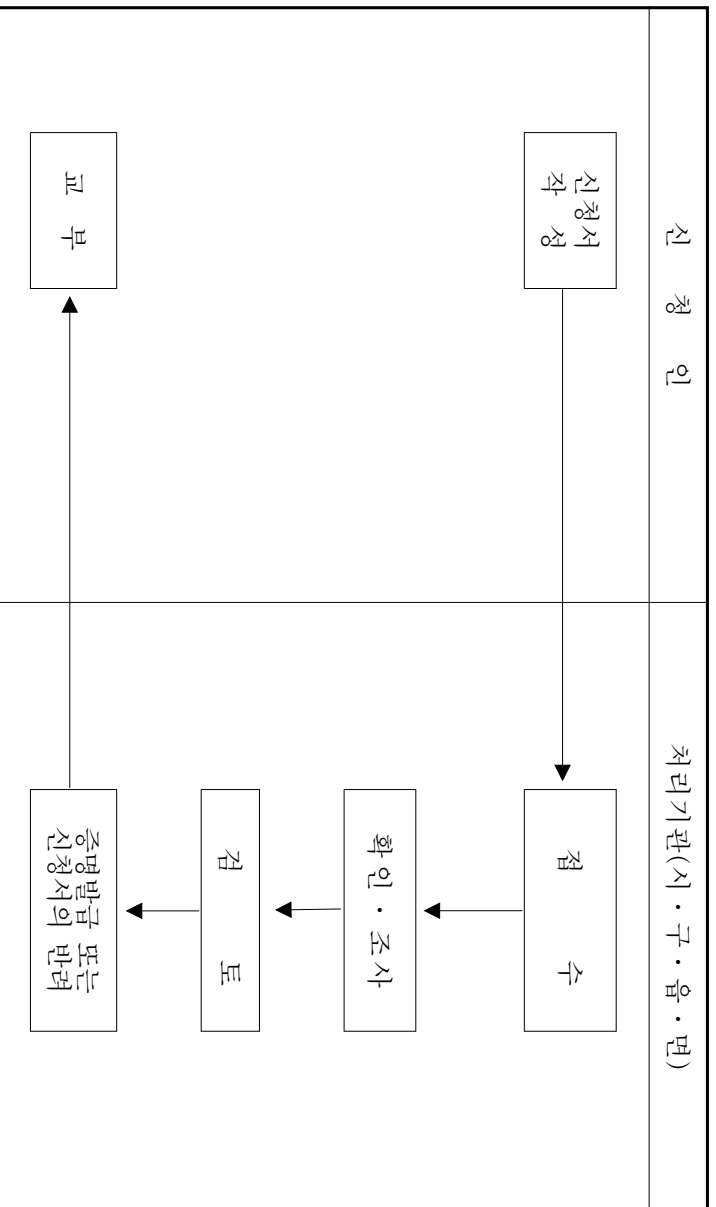
⑨ 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 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 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 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협·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③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작목	⑦영농 착수 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계				/	/	/	/	/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⑫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뒷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계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재	배	작	목	자	여	경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리·동	면적 (m ²)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계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재	배	작	목	임	차	정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리·동	면적 (m ²)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년 월 일

착수전의 농업경영계획

직접경작 임대 휴경

⑮특기사항

기재상 주의사항

-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씁니다.
-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만에 ○표
-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예 : 모내기(10%), 약제 살포(20%) 등)
-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 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9·12·7>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발 급 대 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신 청 인			신 청 농 지				취 득 목 적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소재지 (리·동)	지 번	면 적(m ²)			
								논	밭		

27272-30711비
99.6.23 개정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6.25>

제 호 농 지 취 득 자 격 <input type="checkbox"/> 증 명 <input type="checkbox"/> 증 명 신청서 반려 통지서	명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③주 소 ④연 락 처	시 구 동 도 시 · 군 읍 · 면 리	동 리 번지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⑦지 번 ⑧지 목 ⑨면적(m ²)
취득 농지의 시					
⑩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⑪신청서 반려 사유					
⑫취 득 목 적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합니다.
 증명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인

<유의사항>
 ○ 귀하께서 당해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7272-30811일
98.5.29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농 지 처 분 의 무 통 지 서

1. 성 명
(명 칭)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전체 중 ㎡)

시·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리·동				
합계	/		/	/	/	/
5. 처분의무 발생사유						
6.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

귀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중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하여야 함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안내말씀

1.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7272-30911일
95.11.10 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농 지 매 수 청 구 서

매수 청구인 (농지소유자)		①성 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 락 처		
		⑤전 화 번 호					
⑥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	재	지	지	지	면	이
1				번	목	적(m ²)	용
2							현
3							황
⑦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⑧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치된 농업용시설에 관한 사항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사항			
1							
2							
3							
⑨처 분 명 령 일		년	월	일	⑩처분명령기관		
「농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 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년	월	일	인
매수청구인		서명					
구비서류 : 1. 처분명령서의 사본 1부 2.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35351-12411비
99.5.12 개정승인

297mm × 210mm
(신용용지 54g/m²(재활용품))

제 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지정예고서

1.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임차권자)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2. 농지의 표시								
소재지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²)	비고	
3. 대리경작자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간)
4. 대리경작자 지정사유								
<p>1. 귀하가 소유하고(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위 목록의 농지는 「농지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농지에 해당됩니다.</p> <p>2. 이에 「농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하여 경작하게 할 것임을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합니다.</p>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p>※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대리경작자지정의신청서에 의하여 이 예고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27272-31211일
95.11.10 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대리경작지 지정통지서

귀 하

「농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경작지를 지정하였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자 (임차권자)
시·군	읍·면 리·동				

2. 대리경작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3. 경작기간 및 사용료

경작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
사용료			원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2-31311일
95.11.10 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대 리 경 작 자 지 정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중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신청서	처리기간 7일
----------------------	--	------------

1.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2. 농지의 표시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m ²)	⑧비고
시·군 읍·면 리·동				

3. 대리경작자 및 기간

⑨성명(명칭)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경작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간)

4.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의 대리경작자(□지정 □지정예고)에 대하여(□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하니 대리경작자지정을(□중지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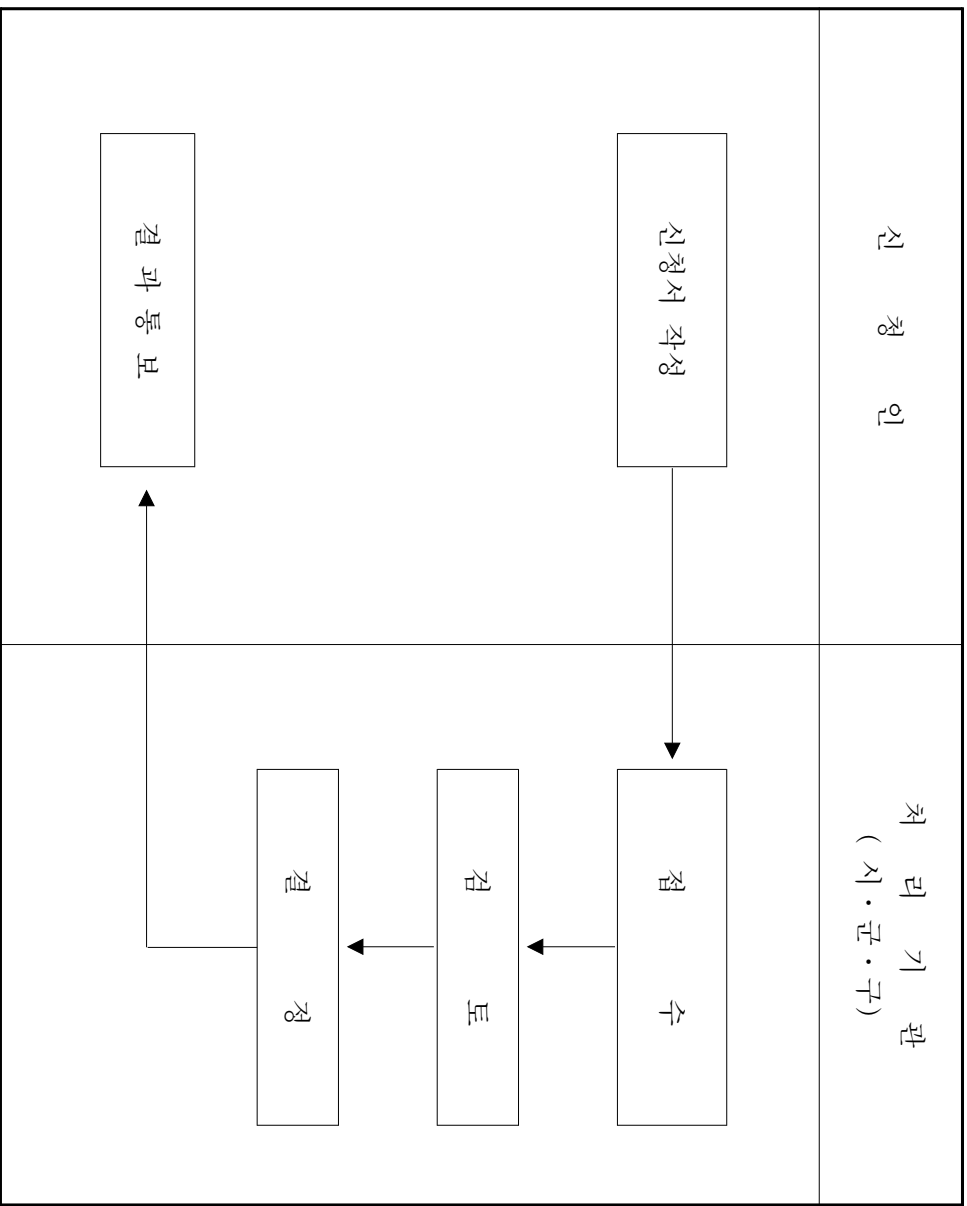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

(뒤 쪽)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

허 가
 변경허가

신청서

척 리 기 간
시·군·구 : 10일
시 · 도 : 20일
농 립 부 : 33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소 재 지	번 지 외 필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발시설부지
③사업예정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④사 업 기 간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⑤전 용 목 적	작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농 립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 하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정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기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발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0호의2·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제37호 및 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1511번
 99.6.23 개정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99.5.21, 2006.1.20>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성명	주소		주 소			면적 외			필지
	소재지	면적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신청사항	진용목적(용도)	진용지역안의 토지							
사업계획	공사계획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 사 사 항									
용도구제한행위제한	법 제34조(진용지역행위제한)에 저촉 여부		저촉 없음		저촉 없음		저촉		의견결정유
	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 여부		저촉 없음		저촉 없음		저촉		
농지전용의성격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인지역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전용농지의보존필요성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미정비		정비			
		지역농지의 집산화 정도		분산		집산화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인근농지의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농지축적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중 합의견		적음		많음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대체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중 합의견		적정		부적정			
중 합의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적합(일부적합)부분적합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조 사 자 직			성명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p>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p> <p>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 지 전 용 허 가 대 장									
①허가번호및일자	제 호(년 월 일)				②수수료				
신청자 (허가받을자)	③성명 (명 칭)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농지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⑦전용목적						⑧총부지면적	m ²		
구 분	⑨전용신청면적(m ²)				⑩전용허가면적(m ²)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⑪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⑫허가조건									
⑬허가의취소 변경사항									
⑭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년 월 일)							
	납부근거	납부년월일(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27272-31921비
99.6.23 개정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농 지 전 용 협 의 대 장									
일련번호 _____									
①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협 의 요 청 기 관				③경 유 기 관					
④문 서 처 리	접 수	문서번호: (년 월 일)			⑤사업시행근거 (법령및사업명)				
	발 송	문서번호: (년 월 일)							
⑥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등의 결정번호 및 일자					(년 월 일)				
⑦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지역 지구)							
⑧전 용 목 적				⑨부지의총면적		m ²			
구 분		⑩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⑪동 의			
		계 (m ²)	답	전	농 지 개 량 시 설 부 지	계 (m ²)	답	전	농 지 개 량 시 설 부 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⑬전 용 예 정 시 기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27272-32221비
99.6.23 개정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뒤 쪽)

⑭ 동 의 조 건											
⑮ 동의의 취소·변경사항											
농 지 보 전 부 담 금 납 부 상 황			부과결정서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상황		통지근거 : 문서번호 (년 월 일)						
			납부근거		납부년월일(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동 의 농 지 명 세											
리(동)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리(동)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27272-32222비
99.6.23 개정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⑥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 면 적 (m ²)	주 재 배 작 물 명
	시·군·읍·면	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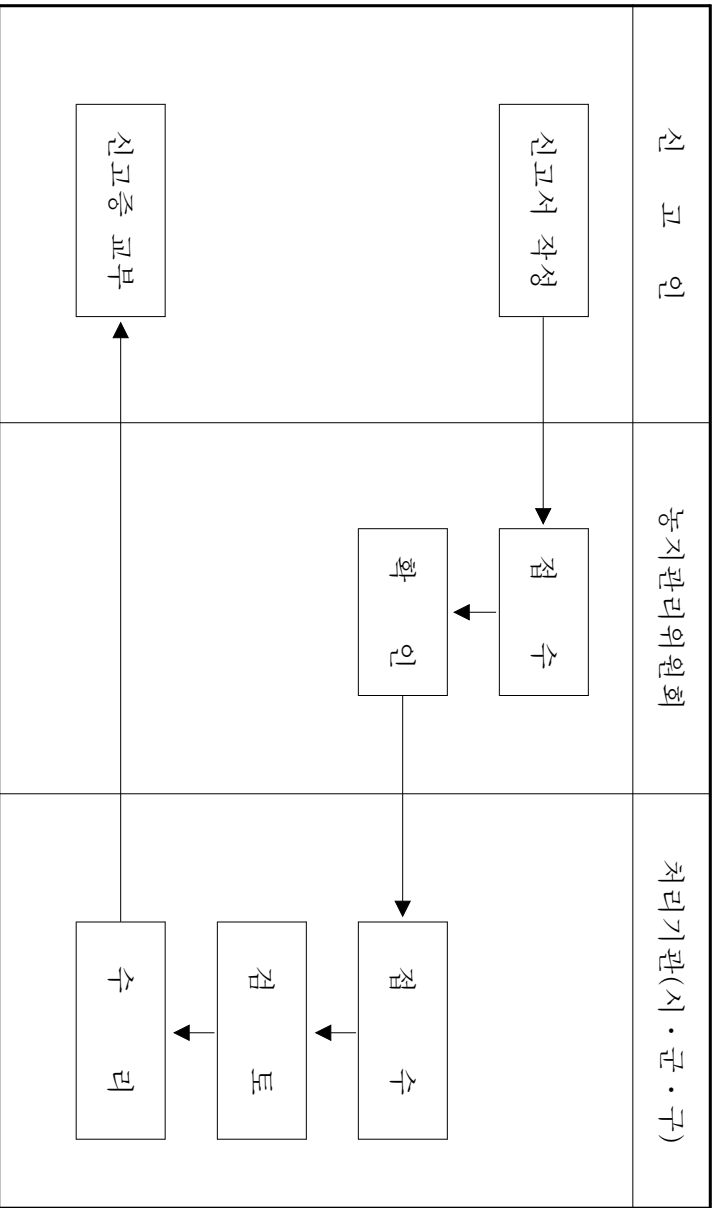
⑦ 농업경영현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 목 별 경 영 구 모 (m ²)				축 종 별 경 영 구 모 (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젓소	돼지	닭	

⑧ 세대원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명 : 14세 미만 ()명, 14세 이상 ()명중 농업종사자()명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①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년 월 일)				②수수료				
신고자 (전용하는자)	③성명 (명칭)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농지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외 필지
⑦전용목적					⑧총부지면적 (㎡)				
구 분	⑨전용신고면적 (㎡)				⑩전용신고수리면적 (㎡)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⑪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⑫신고수리조건									
⑬신고의철회사항									
⑭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납부근거	통지근거 : 문서번호 (년 월 일)							
비 고	납부년월일(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99.12.7>

농 지 전 용 신 고 증

① 신고 수 리 번호		제		호																													
② 신고인		성 명(명 칭) 주 소		주 민(법인)등록번호																													
③ 전 용 농 지		농 지 의 소재 지		번 지 외		필 지																											
구 분		전 용 면 적(m ²) 계		농 지 개 량 시 설 부 지		전 용 하 고 자 하 는 목 적		비 고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④ 사 업 기 간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⑤ 농 지 전 용 신 고 근 거		<input type="checkbox"/>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input type="checkbox"/> 「농지법」 제45조 ※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⑥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m ²)		농		업		진		흥		지		역		전		용		면		적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시행령」 제40조(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2 - 32511일
99.6.23 개정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농 지 의 타 용 도 일 시 사 용 허 가 대 장

허가 번호	허가증 발일 일자	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 용 목 적	허 가 기 간	복구비용		복 구 일 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 소	농 지 소재지	진 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 개 시 부 지 량 설 치			예 치 일 자 및 금 액	반 환 일 자 및 금 액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④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⑥타용도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인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삭제<2006.1.20>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발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지 의 타 용 도 일 시 사 용 협 의 대 장

일 련 번 호	접 수 월 일	협 요 기	의 청 관	처 리 연 월 일	주 된 인·허 가 및 결 정 등 의 연 월 일 및 근 거	주 된 인·허 가 등 의 신 청 인			일 시 사 용 면 적 (㎡)					사 용 적 목	일 사 기	시 용 간	복 구 일 자
						성 명 (명 칭)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농 지 소 재 지	진 흥 지 역 도 구 분	계	답	전				

27272-33111비
99.6.23 개정승인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

복구비용반환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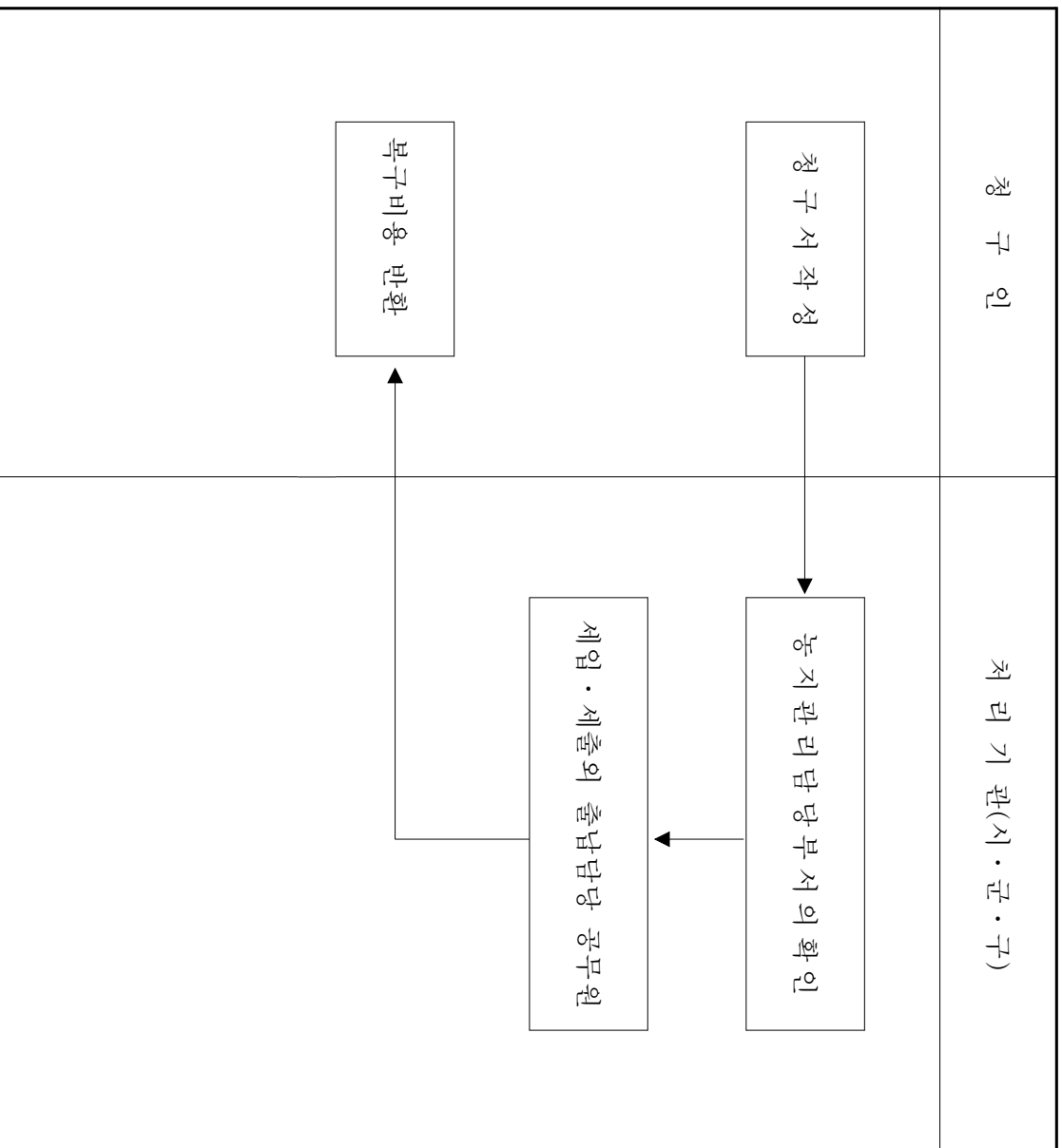
청구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처리기간
		주소					10일
②타용도일시 사용한농지		소재지 면적계	번지 외 필지				면적 m ² 답 m ² 전 m ²
			(전화 :)				
③허가기간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④농지로의 복구일		년 월 일	⑤허가증번호		제 호		
⑥복구비용		원		⑦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보험증권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지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인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⑩인 담당과장 직 성명 ⑪인				수 수 료 없 음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7272-33211번
99.4.19 개정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기 관 명

우(우편번호) (주 소) /전화(000)000-0000/전송(000)000-0000
 000과 과장 000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000 담당자 000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신 : 받 신 :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인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납입의무자 (농지전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업	명(전용목적)	농지 외 필지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농지전용 면적(m ²)	구분	계	답	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계				

(근거 : 영 별표 2 제 호)

□부과 □예과 □부과 □결정	금액(원)	
	감면비율	
	산출내역	

허가·협의·기타 처분 일 자	부과기준일	
--------------------	-------	--

납입 구분 (해당란에 ○표)	통지 (한국농촌공사)	자진납부 (관할청)	분할납부
		납입기간 년 월 일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사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사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 부지의 조사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부분)

통지번호	□□ - □□□□□□ - □□□□□□ - □□
성명 (명칭)	
주소	
사업목적 (전용목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납입통지금액	
납입기한	년 월 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의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120mm×177.8mm(OCR용지 90g/m²)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통 지 번 호	□□ - □□□□□□ - □□□□□□ - □□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명 목 (전 용 목 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의 필지
납 입 통 지 금 액	
납 입 기 한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의
 대행자 한국농출공사 사장 인

< 안 내 >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
 기 바랍니다.

152.4mm×88.9mm(OCR용지 90g/m²)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납입금액	금	원
성명(명칭)		
주소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납입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취급자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달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안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20mm×88.9mm (OCR용지 90g/m²)

(납입자 보관용 뒤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근거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O.C.R

지 로 의 퇴 서 (수납은행용)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수료	별납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성 명(명 칭)		
주 소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 납 인
 취 급 자 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의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유의사항>

-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입 기한내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88.9mm×88.9mm
 (OCR용지 90g/m²)

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

O.C.R	지로번호	<input type="text"/>	금액	<input type="text"/>	원
-------	------	----------------------	----	----------------------	---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C	금액	C	Code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통 지 번 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 명(명칭)		사 업 명 (전용목적)
주 소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 한국농촌공사 >

년 월 일 수 납 인
수납기관 취 급 자 인

152.4mm×88.9mm
(OCR용지 90g/m²)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입 의무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 :)	
		주소			
부과 결정 사항	전용목적	년 월 일 통지번호 □□-□□□□□□-□□□□□□-□□			
	납입기한				
	통지금액 (원)				
신청 사항	연장기간	「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 납시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장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납입의무자)</p> <p>농림부장관 귀하</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자치구청장</p>					
구비서류				수수료	
1.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제원의 조달계획서 2.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관리번호	
------	--

독 축 장

납입의무자	통지번호	□□ - □□□□□□ - □□□□□□ - □□
	성명 (명칭)	
	주소	
	사업명 (전용목적)	
회가청명		
농지보전부담금 채납액	금	원
납입기한		

귀하가 납입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채납되었으니 이미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에 이 독축장을 첨부하여 납입기한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 안내 말씀

1.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제채담처분 또는 지방채담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이 독축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축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 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①통지 번호	납입의무자		④사업명 (전용목적)	전 용 면 적(m ²)									⑧통지 연월일	⑨납입 기한	⑩통지 금액(원)	⑪수납 액(원)	⑫납부 연월일
				⑤합 계			⑥농업진흥 지역 안			⑦농업진흥 지역 밖							
	②주소	③성명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27272-34211비
95.11.10 제정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

① 내역 확인서 번호			② 통지번호	□□-□□□□□□-□□□□□□□□-□□		
③ 납입 전 용자 (농지전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사업명(전용목적)						
⑤ 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농지전용 면적(m ²)	구분	계	답	전		
	⑥ 농업진흥구역					
	⑦ 농업보호구역					
	⑧ 농업진흥지역밖					
합계						
⑨ 부과 금액	금					
⑩ 자진납부기한	년 월 일					
⑪ 농지보전부담금산출세부내역						
<p>「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신청이 있어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 도 지 사</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 자치기구청장 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닐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채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채납처분 또는 지방세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가 청 (전화번호:)
 - 한국농촌공사 (전화번호:)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영수증)

통지번호 : □□ - □□□□□□ - □□□□□□ - □□

지문번호							
------	--	--	--	--	--	--	--

납입 금액	금	원
성명(명칭)		
주소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의	필지
납입기한	년	월 일

「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수납기관
 취급자 인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달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납기관 유의사항>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mm×88.9mm (MICR용지 90g/m²)

(뒤 쪽)

농지보전부담금부과근거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MICR

지 로 의 퇴 서 (수납은행용)

통기번호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수료	별납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성명(명칭)		
주소		
납입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자 인
 (인)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유의사항>

1. 납입기간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9mm×88.9mm
 (MICR용지 90g/m²)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수 신 : 발 신 :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 :)			
	주 소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예정 내역	면 적(m ²)	금 액(원)				
	분할납부 여 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치 리 과 결 과	사 유					
	분할 납부 사항	납 입 기 한	공사착수전	1회	2회	3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액 </div>			

※ 비 고 : 「농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분할하여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납입자	정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당초부과결정번호		□□ - □□□□□□ - □□□□□□ - □□				
과오납내역	구분	년도	부과결정액	기납입액	정당부과액	과오납액
	과오납사유					
환내역	구분	년도	당초부과결정액	기납입액	변경부과결정액	환급액
	환내역					
환상대	금상	농지의표시				
		원상회복부여	년월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환하여 기재		
가산금산출내역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액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결정일	년월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		시 · 도 · 지 · 사		인		
한국농촌공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납입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청구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결정	체	호	(년	월	일)	
통지서				통지기관명:			
송금계좌				예	금	주	계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거	대	은	행
				계	좌	번	호
				년 월 일			
				청구인			
				한국농촌공사 귀하			
구비서류 1.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7272-34411번
95.11.10 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6호의2서식] <신설 2006.1.20>

계 호

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납입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당초부과결정번호	□□ - □□□□□□ - □□□□□□ - □□		
사업명(전용목적)			
전용농지의 표시			
채납현황	부과결정액	납입액	채납액
결손처분취소	처분일자	사	유
	년 월 일		

결손처분 취소 하고 「농지법 시행령」
 결손처분을 취소 제5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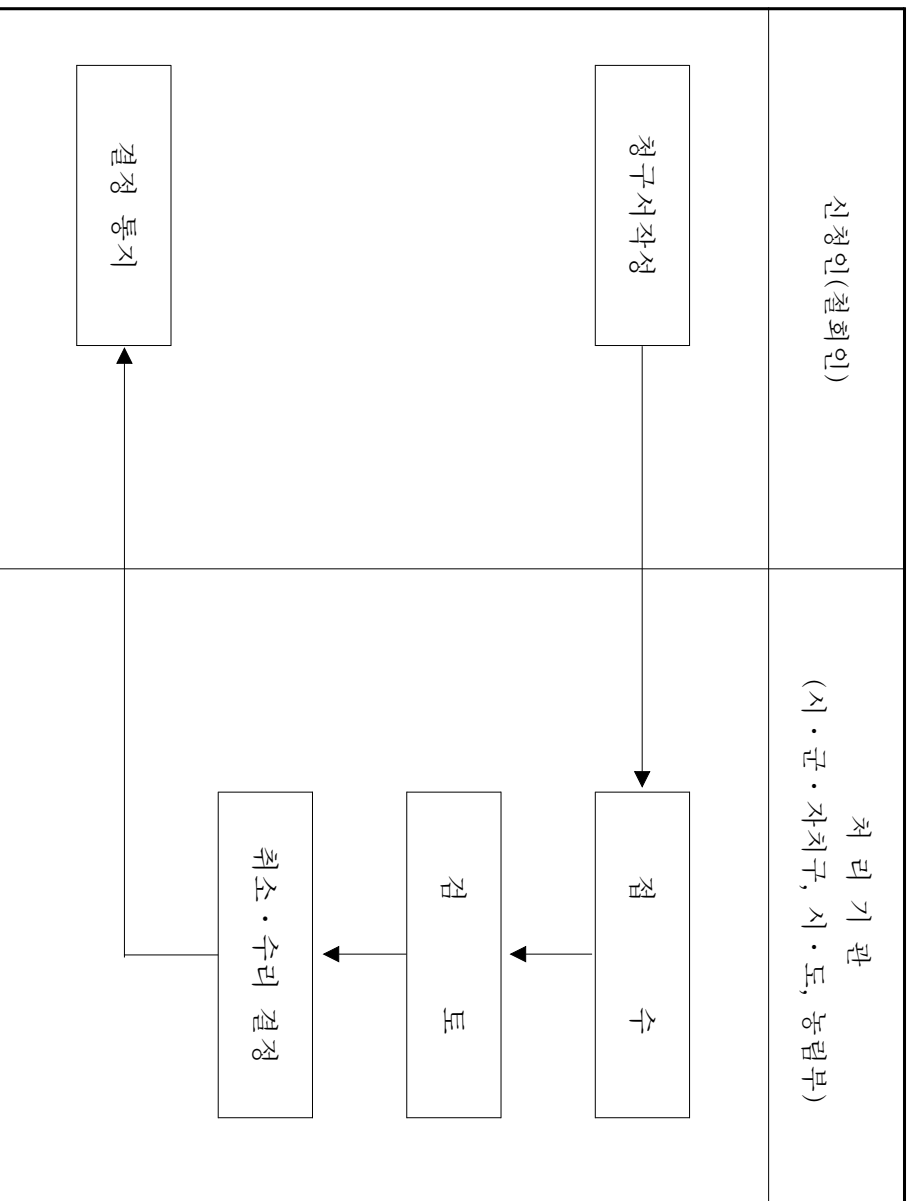
한국의농촌공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신고철회서 <input type="checkbox"/>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7일			
				시 · 도 : 10일			
				농 립 부 : 15일			
신청인 (철회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동	필지
	⑤합계(m ²)	⑥답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⑨신고증 또는 허가증발급일자		년	월	일
⑩허가기간							
⑪취소·철회사유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input type="checkbox"/>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농 립 부 장 관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 농지전용신고 철회 · 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농지전용 허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20만㎡ 미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회	○	-	-

[별지 제50호 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승인 번호	일 자	신 청 인			용 도 변 경 내 역(m ²)						사 유	
					토 지 소재지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 회 변 경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용 도	전용면적	용 도	전용면적		

27272-34911비
95.11.10 제정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①승 인 변 호		계 호	
②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③허 가 의 변 호		④허 가 의 일 자	
⑤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금 회 변 경	
농 지 소 재 지		용 도 변 경 전	
농 업 전 흥 지 역 분 용		계(m ²)	답
농 업 전 흥 구 분		답	전
농 업 전 흥 구 역		계(m ²)	답
농 업 보 호 구 역		답	전
농 업 전 흥 지 역 밖		답	전
계		답	전
용 도 (목 적)		답	전

⑥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 회 변 경	
					용 도	전용면적	용 도	전용면적
시·군·읍·면·리·동								

⑦승인조건 :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별지 제52호서식]

농 지 원 부

1. 일반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최초작성일자 : 년 월 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외겸업	
준농업 법인	명칭			조직형태		사업목적
주소	시	구	동	리·동	읍·면	번지
	도	시·군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

농업경영 변동사항	기록자확인

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	
	~	
	~	
	~	
	~	
	~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	
	~	
	~	
	~	
	~	
	~	

기록사항변경		
사유	일자	확인

27272-35141비
95.11.10 제정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2. 소유농지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경작 구분	공유 자수	소유자 성명	임차인		임차 기간	주재배 작물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변경사유	확인
			공부	실제													
											-	~					
											-	~					
											-	~					
											-	~					
											-	~					
											-	~					
											-	~					
											-	~					

27272-35142
95.11.10 제정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120g/㎡)

자 경 증 명 발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정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주 소 (전화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소	계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m ²)	※ ⑧자경여부	
						자 경	비자경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수료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인
「농지법 시행령」제 75조의 규정에 의함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판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함)

[별지 제54호 서식]

자 경 증 명 발 급 대 장

접 수 일 자	발 급 번호	발 급 일 자	신 청 인			신 청 농 지					자경여부 (필지수기재)	
						소재지	필지수	면 적(m ²)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계	논	밭	자 경	비자경

27272-35311비
95.11.10 제정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99.12.28>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시행일 :

년 월 일

문서번호

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발 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상황보고

구분	용도별	건수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담	전	담	전	계	담	전																	
합 계																											
허가 · 협 의	공공부분 민간부분	계	소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기타시설																								
			소																								
			공장시설 (농수산물 가공공장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기타시설																											
계																											
신고 전용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임의 전용	하천관리시설	산림부구																									
전제지변으로 원상불능지																											

27272-35411보

257mm × 364mm

95.11.10 제정

(인쇄용지(2급) 60g/㎡)

포 상 금 지 금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m ²
범법행위 장소			
⑥사건처리결과			
⑦포 상 금 액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 구비서류			수수료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1부			없 음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함) 1부			
3. 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서 1부			

27272-35511번

99.4.19 개정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농지조사공무원증

No. _____

사
진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농지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인

83mm

27272-35611 일
95.11.10 체정

93mm×65mm
인쇄용지(특급)120g/㎡

(뒷 쪽)

주 의 사 항

1. 조사공무원이 당해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 제 정 1995·12·29 농림수산부예규 제183호
- 개 정 1999·1·15 농 립 부 예 규 제196호
- 1996·6·2 농 립 부 예 규 제203호
- 1999·12·7 농 립 부 예 규 제210호
- 1996·6·2 농 립 부 예 규 제203호
- 2002·5·18 농 립 부 예 규 제217호
- 2002·12·31 농 립 부 예 규 제220호
- 2006·1·12 농 립 부 예 규 제2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2>

①“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3.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개정 2006·1·12>

②“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6·1·12>

③“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벼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설 2002·5·18>

④“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2>

1. 삭제 <2002·12·31>
2.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개정 2006·1·22>

3.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개정 2002·12·31>

4.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개정 2002·12·31>

⑤“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⑥“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1>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 <개정 2005·5·18>
 - 나. 한국농촌공사 <개정 2002·5·18, 2006·1·12>
 - 다.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개정 2002·12·31>
 -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신설 1996·6·2>
 -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신설 1999·12·7>
 -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설 2002·5·18>
 - 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

- 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설 2002·12·31>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의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02·12·3>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개정 2002·12·31>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개정 2002·5·18, 2002·12·31>
5.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02·5·18, 2006·1·12>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 <삭제 2002·5·18>
-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1996·6·2>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02.12.31>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02.12.31>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 1999.6.2>

제4조(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공공단체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6.2>

2의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신설 2002.12.31>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개정 2002.12.31>

5.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제3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제5조(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6조(자격증명 신청자) ①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발급신청) ①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8, 200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31>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15>

3. <삭제 2002·5·18>

4.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삭제 1996·6·2>

6.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5·18>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5·18>

③삭제 <2002·12·31>

④삭제 <2002·12·31>

⑤삭제 <1999·1·15>

제8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삭제 <2002·12·31>

제9조(신속한 확인을 위한 조치 등) 삭제 <2002·12·31>

제4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10조(자격증명발급 요건) 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1996·6·2, 개정 2006·1·1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2002·12·31>
 -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라.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6·6·2, 2002·12·31>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신설 2002·12·31>
 -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신설 2002·12·31>
 -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바.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제4조제2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31>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02·5·18, 2002·12·31>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과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농업경영능력의 판단) <삭제 1996·6·2>

제12조(자격증명의 발급) ①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 2002·5·18, 2002·12·31, 2006·1·12>

②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 2002·5·18, 2002·12·31, 2006·1·12>

③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

제5장 보 칙

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다음 각 호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5>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제13조(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한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개정 2002·12·31>

6. 삭제 <2002·5·18>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1997·12·7>

제14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의 발급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증명발급의 제한) <삭제 1999·6·5>

제16조(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 ①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대장화일(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는 대장)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시·구·읍·면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촌행정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

③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권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17조(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20일까지 당해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29>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예규의 폐지) 농림수산부예규 제180호 농지매매증명 발급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1.15>

이 요령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6.2>

이 요령은 199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

이 요령은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8>

이 요령은 200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5>

이 요령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요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

이 요령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보고											
(단위 : 건, m ²)											
구 분		합 계			답		전		과수원		
시도/ 시군구	취 득 목 적	건수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농업경영										
	농지전용										
	실습지등										
	주말체험 영 농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제	정	1996.12.23	농림부예규 제189호
개	정	1999. 1.15	농림부예규 제197호
		1999. 4.20	농림부예규 제202호
		1999. 6. 3	농림부예규 제204호
		1999.10. 1	농림부예규 제208호
		2001. 8.31	농림부예규 제214호
		2002.10. 9	농림부예규 제219호
		2005. 9. 1	농림부예규 제223호
		2006. 1.12	농림부예규 제225호

I.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5조에 규정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

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조사총괄
-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의 통지
- ④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
- ⑤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의 유예
- 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나. 읍장·면장·동장

- 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 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농지의 조사
- ③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④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다.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

- ①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 ②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라. 한국농촌공사

- ①읍·면·동장의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 ②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

업 무 처 리 단 계	처 리 기 관
1. 농지의 이용실태등 조사	총 괄 : 시·군·구
① 농지이용실태조사	실 사 : 읍·면·동
② 처분대상농지조사	협 조 : 한국농촌공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농지관리위원
	확 인 : 농지관리위원회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① 처분대상농지의 구분	읍·면·동
②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농지관리위원회
③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시·군·구
3.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시·군·구
4. 농지처분명령의 유예 결정	시·군·구
5. 처분명령	
①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총 괄 : 시·군·구
② 처분명령서 송부	실 사 : 읍·면·동
	시·군·구
6.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시·군·구

II. 농지이용실태등 조사

1. 조사대상

가. 농 지

-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 취득한 농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 ②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한계농지
 - ④법 제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
 - ⑤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 ⑥취득후 8년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 ⑦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당해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 ⑧취득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 ①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 ② 상속이나 유증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접수일

나. 농업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 ~ 당년 8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담당기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한국농촌공사 조사 협조)
- 현지실사 협조 : 농지관리위원회
- 조사결과 확인 : 농지관리위원회

나. 조사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96.1.1 이후 취득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구성, 조사대상 리스트, 조사일정, 담당기관(한국농촌공사 참여)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 담당기관에 농지관리위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조사 등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방법

(1) 농지이용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하며, 필요시 관련공부를 확인한다.
- 조사대상 리스트는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불법 관행임대·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중점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중 조사한다.
 - 중점 조사대상 리스트는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 중점조사 대상은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를 리·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농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 등)

(2) 처분대상농지조사

-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처분

대상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구별한 후 이를 현지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 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 읍·면·동장은 처분대상농지조사표를 작성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농지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법인운영실태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 법인운영실태조사표는 법인별로 작성한다

(4)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은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분업무 통지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보한다.

4. 조사사항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②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
- ③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처분대상농지조사

- ①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
- ② 경작 또는 재배작목에 관한 사항
- ③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① 출자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대표사원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④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5.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의 구분기준

가. 농지이용현황

- (1) 농작물 경작 : 조사대상기간 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시설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당해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영농의사없이 부실 경작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

- (2) 다년성식물 재배 : 조사대상기간 동안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년성식물재배에 해당하나, 정원조성 등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 (3) 휴 경 : 조사대상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 (4) 전용(타용도 사용)확정 농지 :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이 확정된 농지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농지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②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나.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②농업인이 당해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③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행하는 농업경영

(2) 임대 또는 사용대

①임대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②사용대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사용대는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부분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

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중 30일 이상을 주요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4) 전부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11조의2제1항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 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 정부나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지소유자와 약정 등을 통해 계획에 입각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 「농지법」 제22조제6항 내지 7항에 의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8조에 의한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경작 또는 재배중인 작물의 수확때까지에 한해 문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자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게 임대·사용대 하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11조)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주요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농작업에 직접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나.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농림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 사업인 시험·실습·연구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

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마.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바.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당해 농지

사.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①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 미만으로 된 경우
- ②농업인이 아닌 자가 대표사원(대표이사)으로 된 경우
- ③농업인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이사)의 1/2 이상으로 된 경우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처분대상농지조사 및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농지를 구별하고 그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처분대상농지의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할 때는 처분대상농지와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처분대상농지조사표 및 법인운영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여부를 의결한다.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사항을 실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읍장·면장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에게 송부한다.
- 읍장·면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는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시의 시장에 한한다) 또는 구청장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다.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지의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 농지 또는 면적
 2. 처분의무 발생 사유
 3.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4.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나. 주소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시청·군청·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된다.
-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 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나.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촌공사와 당해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처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 한다.

마. 처분기간

-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월로 한다.

바. 처분명령의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77조제3항)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은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안됨)
 - ※ 처분명령기간 경과전에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나. 이행강제금의 산출

-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이행강제금 = 당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m²) × 20/100 × 면적(m²)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등은 다음 예에 의한다
 - 이행강제금부과 당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 되어 있는 공시지가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예) : 2002. 1. 1 이후에도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전까지는 2001년도에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중 일정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77조의 규정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마. 이행강제금의 귀속

- 이행강제금은 이를 부과·징수한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V.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가. 농지의 매수

- 한국농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법 제11조제2항, 영 제12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농지의 매도

-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방법·절차 및 지원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된다.
-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 38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 다만, 당해 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되거나,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지(주·상·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나.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위 유무를 조사하여 사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지법」 제61조제1호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농지법」 제1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매도위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법 제1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VII. 보고·기타

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익년 4월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익년 4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외에 수시·특별조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결과 보고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익년 2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청과 당해 읍·면·동의 인력·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구와 읍·면·동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처분대상 농지 조사표

시·구·군 읍·면·동 리										
농지의 표시	지번	지목	주면등록 번호	면적	직업	m ²				
	성명			직업						
농지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영농거리	km			
	이용현황									
농지취득 원인	농지취득 목적		취득자격증 명 발급일		농지취득일					
	경작현황									
	농지이용 현황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							
특기사항										
조사공무원		직	성명	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인		농지관리위원								
결	정	<input type="checkbox"/> 처분대상 농지임		<input type="checkbox"/> 처분대상이 아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210mm×297mm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

법인의 표시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법 인 개 계 상 황	대표의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인여부						
	출자에 관한사항	합계	출자자	출자액	구성비	*특기사항		
			농업인					
			비농업인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인
			농업인인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인
	비농업인인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인				
	정관에 관한사항	법인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합명	<input type="checkbox"/> 합자	<input type="checkbox"/> 유한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주목적 사업						
소유농지(m ²)		계(m ²)	논	밭				
조사공무원		직명		인				
농지소유자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계 호
농 지 처 분 명 령 서

1. 성 명 :
(명 칭)
2.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
4. 처분대상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전체 중 m²)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비 고
시·도	시·군				
합	계	/	/	/	/
처분기간 및 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간)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 ※ 안 내
1. 이 명령서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1.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가. 사유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m²)

시·군	조사대상	계	임 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 사유별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의 「계」 란이 거주지별, 직업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의 「계」 와 일치
 - 청문절차 후 최종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한 인원·면적을 기재

나. 거주지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m²)

시·군	계 (①+②)	관 내 (시·군·구) (①)	관외(외지인)			
			계(②)	자시·도중 타시·군·구	타시·도 (서울제외)	서울

다. 직업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m²)

시·군	계	자영업	농업	회사	공무원	국영기업	기타

2. 처분명령유예 현황

(단위 : 명/m²)

시·군	연도별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계		당해연도		전년도		00년도		00년도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	()	()	()	()	()	()	()	()	()

* 처분명령유예를 통지한 실적 작성

* ()는 매도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처분명령이 유예된 실적 작성

3. 처분명령현황

(단위 : 명/m²)

시·군	처 분 명 령							
	계		처분실적		처분이행중		처분철회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 당해연도중 처분명령 실적 작성

1. 처분실적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농지를 처분한 실적
2. 처분철회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이의제기 등으로 처분을 철회한 실적

가. 처분명령

(단위 : 명/m²)

시·군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처분명령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계										

* 당해년도에 통지한 처분명령 농지의 연도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작성
 「처분명령 계」란은 「2. 처분명령현황」의 「계」와 일치

나. 처분실적

(단위 : 명/m²)

시·군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처분실적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계										

* 당해농지에 통지한 처분명령중 농지처분실적의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작성
 「처분실적 계」란은 「2. 처분명령현황」의 「처분실적」과 일치

다. 처분이행중

(단위 : 명/m²)

시·군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처분이행중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계										

* 당해년도에 통지한 처분명령중 처분하지 않은 농지의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작성
 「처분이행중 계」란은 「2. 처분명령현황」의 「처분이행중」과 일치

라. 처분철회

(단위 : 명/m²)

시·군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처분철회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계										

* 당해년도에 통지한 처분명령중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처분을 철회한 농지의 연도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작성
 「처분철회 계」란은 「2. 처분명령현황」의 「처분철회」와 일치

4.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명/m²/천원)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			징수 실적(당해년)			징수중(누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 징수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액(누계)중 당해년도에 징수한 실적

* 징수중(누계)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미납액('96년 이후부터 누계 실적)

가. 이행강제금 부과 연도별 현황

(단위 : 명/m²/천원)

시·군	이행강제금 연도별 부과 현황																										
	부과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96년부터 당해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미납현황(당해년도 징수액 포함)

* 「부과계」란은 「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의 「계」와 일치

나.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단위 : 명/m²/천원)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연도별 징수실적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당해에 징수한 실적을 부과년도별로 작성

다. 이행강제금 징수증

(단위 : 명/m²/천원)

시·군	이행강제금 미납액중 연도별 부과년도																										
	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당해연도말 현재 미납액

5.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현황

가. 목적외 사용 사유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시·군	조사대상		목적대로 사용	조사결과					
	필지수	면적 (㎡)		목적외 사용					
				소계	인대 (사용대)	위탁 영농	휴경	전용	기타

나. 피처분통지 기관별 목적의 사용 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m²)

피처분통지기관명 (대표자)	처분통지면적	처분통지사유	통지일자	비고
<div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10px;">건수</div>				

다. 피처분통지 기관별 미취득(미등기)농지 현황

피처분통지 기관명(대표자)	발급일	미취득 농지			취득목적	농지 상태
		소재지	지 목	면적(m ²)		

6.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상황

(단위 : 명/㎡/천원)

지부별	매 수 청 구		매 수			매 도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농지법 시행령 관련 고시

농림부고시 제2006- 1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농림부고시 제2003-20호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부고시 제2006- 2호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농림부 고시 제2006 - 1호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0일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2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1-83호는 이를 폐지한다.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37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제 정 1999.5.19 농림부고시 제1999-28호
개 정 2003.5. 3 농림부고시 제2003-20호

I.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신청 대상농지

1. 연결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연결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결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II.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절차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신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신청서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추천

농지를 산림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산림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추천을 결정 한 경우는 별지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III. 기타 유의사항

농지를 산림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농지전용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부고시 제2006 - 2호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06년 1월 20일
농림부장관

I.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대상 농지 및 신청인

1. 감면 추천대상 농지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③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안의 농지

나.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다.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2. 감면 추천대상 신청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와 그와 관련된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개인

II.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절차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신청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입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확인 및 추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추천을 결정한 후에는 그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송부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담당부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시 이를 감면 함

Ⅲ. 유의사항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농지전용과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별지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신청대상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⑤감면추천	
	사·군·구	읍·면	리·동				추천여부	추천결정근거
⑥주말·체험영농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⑦감면기준	
	사·군·구	읍·면	리·동				적합여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p>위 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3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p>								
<p>※ 구비서류 : 소유권(④ 및 ⑥농지)을 입증하는 서류</p> <p>< 기재상 주의사항 ></p> <p>※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p>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평)	

2.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임 대 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연 간 임 차 료	금 원 또는 수확량의 %
임차료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②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임차인은 당해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4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 제6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농지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위 농지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농지 사용대차계약서

사용대주와 사용차주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평)

2. 계약내용

제1조(사용대차 기간)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위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로 합의한다.

제2조(농지의 인도)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년 월 일 까지 사용차주에게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사용차주가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3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사용차주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 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사용차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사용차권의 양도 및 사용차 농지의 전대
2. 사용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5조(계약의 해지)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제3조·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차주는 사용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사용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농지의 반환) 사용차주는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대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위 농지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대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사용차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농지법령집

만든날 2006년 1월 일

펴낸날 2006년 2월 일

발행처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만든곳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02) 500 - 1671
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펴낸곳 한국농촌공사

관련 법령

2006. 1.

목 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 건축법 시행령 / 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7
- 骨材採取法 / 8
- 觀光振興法 / 8
- 鑛業法 / 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收用·사용된 土地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法 / 12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
- 국세기본법 시행령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18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 18
- 農藥管理法 / 19
- 農漁村道路整備法 / 19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20
- 농어촌정비법 / 20
-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 25
- 農業機械化促進法 / 26
- 農業·農村基本法 / 26
- 대기환경보전법 / 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7
- 大韓民國憲法 / 29
-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 / 29
- 道路法 / 29
- 都市開發法 / 30
- 도시개발법 시행령 / 31
- 도시철도법 / 31
- 문화재보호법 / 32
- 민법 / 32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32
- 부동산등기법 / 33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33
- 肥料管理法 / 34
- 私道法 / 3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34
- 사회복지사업법 / 35
- 山林法 / 3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36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36
- 산지관리법 / 38
- 首都圈整備計劃法 / 40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40
- 水産業法 / 40
- 수질환경보전법 / 41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42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43
- 어촌·어항법 / 51
- 영유아보육법 / 52
- 奧地開發促進法 / 52
- 流通團地開發促進法 / 52
- 유통산업발전법 / 52
- 임대주택법 / 52
- 의료법 / 53
-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 53
- 자연공원법 / 5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4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54
- 電源開發促進法 / 54
- 傳統寺刹保存法 / 56
- 精神保健法 / 56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57
- 種子産業法 / 57
- 住民登錄法 / 57
- 中小企業基本法 / 58
- 지방세법 시행령 / 58
- 지방자치법 / 60
- 지적법 / 60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 61
- 철도사업법 / 6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6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2
- 택지개발촉진법 / 62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63
- 廢棄物管理法 / 63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63
- 항공법 / 65
- 港灣法 / 65
- 화물유통촉진법 / 6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11條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①開發制限區域에서는 건축물의 建築 및 用途變更, 工作物の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土地의 分割,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이하 “都市計劃事業”이라 한다)의 施行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7>

1.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建築 또는 工作物の 設置와 이에 따르는 土地의 形質變更
 - 가. 道路·鐵道 및 上·下水道 등 公共用施設
 - 나. 畜舍 및 倉庫 등 農林水産業을 영위하기 위한 建築物 및 工作物
 - 다.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
 - 라. 農路·堤防·마을會館 등 開發制限區域의 住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施設
 - 마. 室外體育施設
 - 바. 休養林·樹木園 등 都市民의 餘暇活用을 위한 施設
 - 사. 國防·軍事에 관한 施設
 - 아. 學校·廢棄物處理施設 및 電氣供給施設 등 公益施設

2. 開發制限區域안의 建築物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聚落地區안으로의 移築
3. 公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開發制限區域안에서 施行하는 公益事業에 한한다)의 施行으로 인하여 철거된 建築物의 移築을 위한 移住團地의 造成
4. 建築物의 建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土地의 形質變更으로서 營農을 위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形質變更
5. 伐採面積 및 樹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竹木의 伐採
6.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土地의 分割
7. 모래·자갈·土石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第1號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를 近隣生活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用途變更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

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자. 삭제 <2005.3.18>

9.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삭제 <2003.2.24>
-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액화가스취급소
-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바. 전신전화국
 -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통신용시설
- 20.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骨材採取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4.12.31>

1. “骨材”라 함은 河川·山林·公有水面 기타 地上·地下등에 賦存되어 있는 岩石(碎石用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建設工事의 基礎材料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 **觀光振興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4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6>

6. “觀光地”라 함은 自然的 또는 文化的 觀光資源을 갖추고 觀光客을 위한 기본적인 便宜施設을 設置하는 地域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觀光團地”라 함은 觀光客의 다양한 觀光 및 休養을 위하여 각종 觀光施設을 綜合的으로 開發하는 觀光據點地域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第3條 (觀光事業의 종류) ①觀光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旅行業 : 旅行者 또는 運送施設·宿泊施設 기타 旅行에 附隨되는 施設의 經營者등을 위하여 당해施設利用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代理, 旅行에 관한 안내 기타 旅行의 편의를 제공하는 業

2. 觀光宿泊業 : 다음 各目에서 規定하는 業

가. 호텔業 : 觀光客의 宿泊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제공하거나 宿泊에 附隨되는 飲食·運動·娛樂·休養·公演 또는 研修에 적합한 施設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業

나. 休養콘도미니엄業 : 觀光客의 宿泊과 炊事に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이를 당해施設의 會員·共有者 기타 觀光客에게 제공하거나 宿泊에 附隨되는 飲食·運動·娛樂·休養·公演 또는 研修에 적합한 施設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業

3. 觀光客利用施設業 : 다음 各目에서 규정하는 業

가. 觀光客을 위하여 飲食·運動·娛樂·休養·文化·藝術 또는 레저등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2種이상의 施設과 觀光宿泊業의 施設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會員 기타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

4. 國際會議業 : 大規模 觀光需要를 誘發하는 國際會議(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開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 國際會議의 計劃·準備·진행등의 業務를 委託받아 代行하는 業

5. 카지노業 : 專門營業場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機具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特定人에게 財産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參加者에게 損失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業

6. 遊園施設業 : 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觀光客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觀光便宜施設業 :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외에 觀光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施設등을 운영하는 業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細分할 수 있다.

第53條 (造成計劃의 施行) ①造成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사업(이하 “造成事業”이라 한다)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행한다.

②事業施行者가 觀光地등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造成事業에 필요한 土地를 買入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로서 土地를 買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16>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④事業施行者가 아닌 者로서 造成事業(시장·군수·구청장이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造成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⑤觀光團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政府投資機關 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觀光團地開發者는 필요한 경우 用地의 買受業務와 損失補償業務(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鑛業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3條 (法定鑛物) ①이 法에서 “鑛物”이라 함은 金鑛·銀鑛·白金鑛·銅鑛·鉛鑛·亞鉛鑛·蒼鉛鑛·錫鑛·안티모니鑛·水銀鑛·鐵鑛·크롬鐵鑛·티탄鐵鑛·硫化鐵鑛·망간鑛·닉켈鑛·코발트鑛·텅그스텐鑛·모리브덴鑛·砒素鑛·인鑛·硼素鑛·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石炭·黑鉛·金剛石·石油(天然핏치 및 可燃性天然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雲母(絹雲母 및 蛭石을 포함한다)·石綿·硫黃·石膏·蠟石·滑石·藍晶石·紅柱石(珪線石을 포함한다)·螢石·明礬石·重晶石·霞石·珪藻土·長石·沸石·蛇紋石·珪灰石·水晶·軟玉·高嶺土(陶石·벤토나이트·酸性白土·蛙目粘土·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포함한다)·石灰石(白雲石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砂金·砂鐵·砂錫·珪石·珪砂·우라늄鑛·리튬鑛·카드미늄鑛·세륨鑛·토륨鑛·베리륨鑛·탄탈륨鑛·니오비움鑛·질코늄鑛·바나듐鑛 기타 稀有元素를 含有하는 土石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第1項의 鑛物의 廢鑛 또는 鑛滓로서 土地와 附屬되어 있는 것은 이를 鑛物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시행일 2006.7.1
 第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

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4.1.16 법률 7061호]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05.9.8 대통령령 19035호]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37조 (입찰보증금)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 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收用·사용된土地의정리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7724호], 시행일 2007.1.1

第2條 (還買權이 消滅되지 아니한 收用土地의 처리) ①國防部長官은 特別措置令에 의하여 收用된 土地의 收用代金으로 지급한 證券의 償還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償還이 종

료된 날부터 5年 이내에 당해 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軍事상 필요없게 된 土地(이하 “還買對象土地”라 한다)중 이 法 施行당시 還買權이 消滅되지 아니한 土地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해 土地의 被收用者 또는 그 相續人(이하 이 條에서 “還買權者”라 한다)에게 還買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還買權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全國을 普及對象으로 하는 2種 이상의 日刊新聞에 2回 이상 公告하여야 한다.

②還買權者는 國家가 收用한 당시의 價格에 證券의 發行年度부터 還買年度까지 年 5분의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國庫에 납부하고 당해 土地를 買收할 수 있다.

③還買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公告가 끝난 날부터 3月이 경과한 때에는 還買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第3條 (還買權이 消滅된 收用土地의 처리) ①國防部長官은 還買對象土地로서 還買通知 또는 公告없이 이 法 施行당시 還買權이 消滅된 土地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제외한 土地의 被收用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國有財産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官(이하 “財産管理官”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年 12月 31日까지 당해 土地를 우선 買收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被收用者 또는 그 相續人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第2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1. 이 法 施行당시 軍事상 사용하고 있거나 5年 이내에 사용할 計劃이 있다고 財産管理官이 인정한 土地

2. 還買權이 消滅된 후 이 法 施行日전까지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交換·讓與 및 國防部長官외의 다른 所管廳으로 管理換된 土地

②第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還買權者”는 “被收用者 또는 그 相續人”으로 본다.

③被收用者 또는 그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公告가 끝난 날부터 3月 이내에 買收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買收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

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2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단지조성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18849호]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비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보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8.4>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20 건설교통부령 558호]

제33조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①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 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전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11호]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中央會(이하 “農林水協會”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第51條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의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

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69條 (綜合流通센터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專門流通業體에 그 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綜合流通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게 그 運營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 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運營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綜合流通센터의 設置, 施設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農藥管理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시행일 2006.4.1

第3條 (營業의 登錄 등) ①製造業·原劑業 또는 輸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2.11>

③삭제 <1999.3.31>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人力·施設·裝備 등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1996·8·8>

□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2條 (農漁村道路의 定義) ①이 法에서 “農·漁村道路”(이하 “道路”라 한다)라 함은 道路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道路(邑 또는 面 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서 農漁村地域 住民의 交通便益과 生産·流通活動 등에 共用되는 公路중 第4條에 열거되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道路를 말한다. <개정 1994.12.22>

②第1項의 道路는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第3條 (道路網 등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

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22>

1. “道路網”이라 함은 邑·面單位別로 구성된 道路體系를 말한다.

2. “道路附屬物”이라 함은 道路管理에 필요한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道路元標, 里程標, 交通 및 道路標識

나. 道路상의 防護울타리, 街路樹 또는 街路燈으로서 郡守(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設置한 것이다. 道路에 連接하는 駐車場 및 道路修繕用 材料積置場으로서 郡守가 設置한 것

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것

3. “他工作物”이라 함은 道路와 상호 그 效用을 겸하는 堤防, 護岸, 鐵道 또는 軌道用的 橋梁, 橫斷步道(地下橫斷步道を 포함한다)·陸橋 등의 工作物을 말한다.

4. “道路의 整備”라 함은 道路의 開設, 擴張 및 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6223호]

第29條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개정 1999.2.5>)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시행일 2006.4.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1.12.29, 2002.12.26, 2005.5.31, 2005.8.4>

3.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事業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나. 耕地整理, 排水改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各목의 事業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

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개

정 2005.12.29>

④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2.1.14]

第31條 (生活環境整備事業의 대상범위) ①生活環境整備事業은 시의 농촌동(동의 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및 郡의 面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

만, 효율적인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邑·面의 일부 地域을 포함할 수 있으며, 生活環境整備事業의 施行중에 面에서 邑으로 변경된 地域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面으로 본다.<개정 1997.1.13, 2001.12.29, 2005.5.31>

②生活環境整備事業중 第2條第7號 各目 및 各目的 集團화된 마을造成과 再開發 대상마을의 整備事業은 農漁村마을 整備區域(이하 “마을整備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告示된 地域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0.1.28>

③政府는 第2條第7號 各目 및 各目的 分散된 마을의 整備 등을 輿地開發促進法·島嶼開發促進法 및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등 관련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地域實情에 맞게 효율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0.1.28>

第32條 (마을整備區域의 지정<개정 2000.1.28>) ①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地域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地域을 마을整備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 第1號의 地域과 그 주변의 農耕地 등 土地 및 沿岸海面을 포함하는 地域

②시장·군수·구청장은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

한 市·郡·區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마을整備區域 對象地를 선정하고 그 區域에 대한 生活環境整備事業 基本計劃(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道知事は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고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2.12.26>

③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효율적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林部長官이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0.1.28>

④마을整備區域은 마을整備區域別로 사업 着手時期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告示 등 필요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⑤마을整備區域 지정의 변경 또는 解除는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에 관한 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第43條 (換地計劃) ①農業基盤整備事業과 生活環境整備事業(이하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이라 한다)의 施行者는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施行前의 土地에 대신하여 事業施行후의 土地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金錢으로 清算하게 하기 위한 換

地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換地計劃에 있어서 換地는 종전의 土地와 상응하여야 하되,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換地는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 集團指定하여야 한다.

③換地를 받을 수 있는 者는 登記簿상의 土地所有者로 하여야 한다.

④換地計劃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 土地所有者別 換地計劃 및 清算金 내역
2. 종전 및 施行후 土地 筆地別 내역
3.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土地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土地의 내역
4. 기타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⑤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換地는 農耕地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生活環境整備事業 병행시 土地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非農耕地를 지정할 수 있다.

⑥換地로 지정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면적과 비교하여 增減이 土地所有者別로 100分の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算定한 면적의 100分の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千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까지 增減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⑦國公有地 또는 한국농촌공사 所有土地외의 土地중 法的 地目이 溝渠, 道路, 河川, 堤防 또는 溜池인 土地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換地計劃區域안에 1千제곱미터 이하의 土地所有者가 있는 경우에는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金錢으로 清算한다. 다만,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受惠者總會의 議決(代議員會의 議決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 이하의 土地所有者에 대하여도 換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0.1.28, 2005.12.29>

⑧農業基盤等整備事業의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 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所有權외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이 있는 경우 이와 交換될 土地에 그 所有權외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의 目的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第56條 (交換·分合의 施行) ①市長·郡守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農地所有者 2人이상의 申請이 있거나 申請이 없더라도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農地에 관한 權利, 그 農地의 이용에 필요한 土地에 관한 權利 및 農業基盤施設·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의 交換·分合(이하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②市長·郡守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分合을 施行하는 때에는 交換·分合計劃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 그 概要를 告示하고 이를 市長·郡守와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2.5, 2002.12.26, 2005.12.29>

③시·도지사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分合計劃의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第2項, 第10條 및 第12條第1項·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97.1.13, 2002.12.26>

④2人 이상의 土地所有者는 農地의 集團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協議에 의하여 交換·分合을 施行할 수 있다.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 또는 이를 해제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26]

第77條 (限界農地등 整備의 종류)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限界農地整備地區로 지정·告示한 地域안에서는 地域與件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整備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果樹·園藝·特用作物·畜産團地·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8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第79條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 및 告示) ①시장·군수는 限界農地등 중에서 整備의 필요성이 있는 地域을 限界農地整備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시장·군수가 限界農地整備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解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2.12.26>

③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界農地整備地區의 指定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2.12.26>

④限界農地整備地區의 指定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3條 (토지 및 시설의 분양<개정 2002.12.26>) ③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農地를 分讓받을 경우에는 農地法 第8條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賃貸할 경우에는 農地法 第22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1.13, 2002.12.26>

④第1項第2號의 非農業인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農地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第85條 (限界農地등의 賣買등) ①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施行者가 整備地區안의 農地를 매입할 경우 農地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2002.12.26>

②한국농촌공사는 限界農地와 인접한 農地·林野등 기타 필요한 土地를 買入·賣渡하거나 第82條의 規定에 따라 開發하여 賣渡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등을 賣買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第85條의3 (農工團地開發의 지원) ①市長·郡守는 管轄 農村地

域의 産業을 振興하기 위하여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農工團地를 指定하고 이를 開發한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市長·郡守에게 農工團地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의 指定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5條 (農漁村住居環境改善事業計劃의 樹立) ①市長·郡守·區廳長은 改善地區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住居環境改善事業計劃(이하 “改善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農漁村住居環境改善事業(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改善地區가 農漁村整備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그 計劃에 적합하게 改善事業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0.1.28>

②市長·郡守·區廳長은 關係行政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改善事業計劃을 확정한다. <개정 1999.1.18>

③改善事業計劃에는 적어도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土地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住宅改良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사항
3. 道路·上下水道·下水處理施設등 公共基盤施設, 福祉施設 등 住民便益施設, 生産物集荷施設등 所得增大寄與施設, 綠地空間의 設置 및 마을造景計劃등 마을整備에 관한 사항
4.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推算額 및 그 調達計劃에 관한 사항
5. 개선사업의 施行計劃 및 施行者에 관한 사항

□ 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시행일 2006.4.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機械”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후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등에 사용되는 機械·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

□ 農業·農村基本法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6997호]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第15條 (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 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人は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營農組合法人は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營農組合法人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の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管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 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 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第16條 (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적으로 農業을 경영하 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 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3條 (農政審議會) ①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 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 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9호], 시행 일 2006.12.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 다. <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2004.2.9, 2005.3.31, 2005.12.29>

8. “特定大氣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 는 大氣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을 大氣 에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19172호]

[별표 1] <신설 2005.4.15>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제10조제2항관련)

1.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배출시설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을 제외 한다.

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積算)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03.6.30, 2005.4.15>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3조제2항관련)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

	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1. 4종 및 5종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 및 2종사업장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한다.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

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

다. <개정 2002.2.4, 2004.1.29>

2. “多目的댐”이라 함은 建設交通部長官이 建設하는 댐으로서 特定用途중 2 이상의 用途로 이용하는 것(特定用途에 專用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道路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2條 (道路의 定義) ①이 法에서 道路라함은 一般의 交通에 供用되는 道路로서 第11條에 列擧한 것을 말한다.<改正 1966.8.3, 1970.8.10>

②第1項의 道路에는 터널·橋梁·渡船場·道路用 엘리베이터 및 道路와 一體가 되어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道路附屬物을 포함한다.<改正 1993.3.10, 1999.2.8>

第3條 (道路附屬物의 定義) ①이 法에서 道路의 附屬物이라 함은 道路構造의 보전과 安全하고 원활한 道路交通의 확보 기타 道路의 관리에 필요한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1966.8.3, 1993.3.10>

1. 道路元標, 里程標, 修繕擔當區域標, 道路境界標와 道路標識
2. 道路의 방호울타리, 街路樹 또는 街路燈으로서 道路管理廳이 設置한 것

3. 道路에 沿接하는 自動車駐車場 및 道路修繕用材料積置場과 이들 施設을 綜合 管理하는 道路管理事業所로서 道路管理廳이 設置한 것

3의2. 道路에 관한 情報提供裝置·氣象觀測裝置 또는 緊急連絡施設로서 道路管理廳이 設置한 것

4.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한 것

②삭제<1999.2.8>

□ **都市開發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開發區域”이라 함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2. “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都市開發區域안에서 住居·商業·産業·流通·情報通信·生態·文化·保健 및 福祉 등의 機能을 가지는 團地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都市開發區域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都市開發事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市·道”라 한다)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が 協議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者를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國家가 都市開發事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大統領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 규모, 요청의 節次, 提出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개정 2002.12.30>)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30>

第11條 (施行者 등) ①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號의 者중에서 指定權者가 이를 지정한 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에서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중 過密抑制圈域안의 사업기간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6.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土木工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의 免許를 받는 등 開發計劃에 적합하게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8.5 대통령령 18995호]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2005.8.5>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3호]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1. “都市鐵道”라 함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都市交通圈域에서 建設·운영하는 鐵道·모노레일등 軌道에 의한 交通施設 및 交通手段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시행일 2006.7.1

第5條 (重要無形文化財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無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要無形文化財를 指定할 때에는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保有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한 保有者외에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로 인정할 만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者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技·藝能의 傳授教育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文化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자가 명예보유자로 인

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重要無形文化財 保有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5호]

第27條 (失蹤의 宣告) ①不在者의 生死가 5年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失蹤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戰地에 臨한 者, 沈沒한 船舶중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 者 기타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戰爭終止후 또는 船舶의 沈沒, 航空機의 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후 1年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07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4호], 시행일 2006.6.1

제40조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6.12.23, 1996.12.30, 2005.12.29>

1. 신청서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서면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6183호]

第3條 (契約書등의 檢印에 대한 特例) ①契約을 원인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기재된

契約書에 檢印申請人을 표시하여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郡守(이하 “市長등”이라 한다)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의 檢印을 받아 管轄登記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2. 目的不動産
 3. 契約年月日
 4. 代金 및 그 支給日字등 支給에 관한 사항 또는 評價額 및 그 差額의 精算에 관한 사항
 5. 不動産仲介業者가 있을 때에는 不動産仲介業者
 6. 契約의 조건이나 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期限
- ②第1項의 경우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이 執行力 있는 判決書 또는 判決과 같은 效力을 갖는 調書(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判決書등에 第1項의 檢印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長등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가 第1項, 第2項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檢印을 한 때에는 그 契約書 또는 判決書등의 寫本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契約書등의 檢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肥料管理法**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7000호]

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개정 1999.3.31>)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②삭제 <19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3.31>

④肥料生産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가 定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 **私道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67호]

第4條 (開設許可) 私道を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管轄市

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私道を 改築, 増築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6호], 시행일 2006.8.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施設, 당해 施設의 效用을 增進시키거나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사. 水道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수도 및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아. 下水道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 및 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

파. 전원개발촉진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源設備

하.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

거.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7. “事業施行者”라 함은 公共部門외의 者로서 이 법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받아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山林法** [일부개정 2004.2.9 법률 7167호]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86.12.20, 1990.1.13, 1994.12.22, 1996.8.8, 1997.4.10>

1. “山林”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農地(草地를 포함한다)·住宅地·道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와 立木·竹은 제외한다.
 - 가. 集團的으로 生育하고 있는 立木·竹과 그 土地
 - 나. 集團的으로 生育한 立木·竹이 一時 喪失된 土地
 - 다. 立木·竹의 集團的 生育에 使用하게 된 土地
 - 라. 林道

마. 가目 내지 다目的 土地안에 있는 岩石地·沼澤地
第10條의4 (林道の 設置등<개정 1999.2.5>) ①山林廳長은 山林의 효율적인 開發·이용의 高度化 또는 林業의 機械化등 林業의 生産基盤整備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山林所有者의 同意를 얻어 林道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林道の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林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新設 2000.1.28>

③山林廳長, 市·道知事, 山林組合中央會長 또는 山林組合長은 林道の 設置 또는 荒廢地의 復舊등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그 施行에 관한 業務를 指導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機關 또는 그 所屬機關에 山林土木技術者를 配置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1999.2.5, 2000.1.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道の 設計·施設基準 및 林道の 設置節次·관리·山林土木技術者의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0.1.1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 등과 이와 관련된 教育·연구·업무·情報處理·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文化·醫療·觀光·體育·福祉施設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各目的의 것을 말한다.

가. 國家産業團地 : 國家基幹産業·尖端科學技術産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 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地域을 産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나. 地方産業團地 : 다음의 구분에 의한 産業團地를 말한다.

(1) 一般地方産業團地 : 産業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活性化를 위하여 제7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2) 都市尖端産業團地 : 知識産業·文化産業·情報通信産業 등 尖端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다. 農工團地: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4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過密抑制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이 현저히 높아 工場의 移轉促進 및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3. “成長管理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을 計劃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허용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4. “自然保全地域”이라 함은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

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5. “誘致地域”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國家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地域을 말한다.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아파트型工場”이라 함은 同一建築物안에 다수의 工場이 동시에 入住할 수 있는 多層型 集合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 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産業團地의 관리”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가. 産業團地안의 用地 및 施設의 賣却·賃貸 및 사후관리
나. 産業團地안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盤施設의 設置·유지·補修 및 개량

다.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의 事業活動支援

9. “管理權者”라 함은 第3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權限을 가진 者를 말한다.

10. “管理機關”이라 함은 第30條第2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1. “入住企業體”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製造業·知識産業·情報通信産業·資源備蓄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 체결한 企業體를 말한다.

12. “支援機關”이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入住企業

體의 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金融·保險·醫療·教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 체결한 機關을 말한다.

13. “工場의 設立”이라 함은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것을 말한다.

14. “工場의 新設”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工作物을 築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既存建築物의 用途를 工場用途로 변경하여 製造施設등을 設置하는 것을 말한다.

15. “工場의 增設”이라 함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工場의 工場建築面積 또는 工場敷地面積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5.8.4>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 (2) 사망사업법에 의한 사망지의 산지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
정도서의 산지
-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 시설의 설치
 -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9. 가축의 방목
 -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11.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12. 물건의 적치
 -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8호]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首都圈”이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周邊地域을 말한다.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樹木園)”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水産業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7호]

第9條 (마을漁業 등의 免許) ①마을漁業은 일정한 地域안에 거주하는 漁業人의 共同利益을 증진하기 위하여 漁村契 또는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이하 “地區別組合”이라 한다)에 한하여 免許한다.

②協同養殖漁業은 일정한 地域안에 거주하는 漁業人의 공동이익과 漁業의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漁村契,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營漁組合法人 또는 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한다.

③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水面에 대하여 행하는 海藻類養殖漁業과 바닥을 이용하는 貝類 및 魚類등養殖漁業은 당해 水面에 인접한 漁村契·營漁組合法人 또는 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한다.

1. 마을漁業의 漁場안에 있는 경우

2. 滿潮시 海岸線으로부터 500미터(西海岸의 경우에는 1千미터)안의 水面으로서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가 漁業調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灣 또는 地域單位의

大單位開發水面(이하 “大單位開發水面”이라 한다)을 이용한 養殖漁業은 第2項 및 第3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할 수 있다. 이 경우 大單位開發水面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⑤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人の 공동이익과 일정한 地域안의 漁業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漁村契·營漁組合法人 또는 地區別組合에 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외의 漁業을 免許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30]

第9條의2 (營漁組合法人の 육성) ①漁業人は 協業的 漁業經營으로 生産性を 높이고 水産物の 共同出荷 및 加工·輸出 등을 통하여 漁家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營漁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漁組合法人は 法人으로 한다.

③營漁組合法人は 漁業人中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한다. 다만,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養殖漁業의 免許를 취득할 수 있는 營漁組合法人の 組合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漁業人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漁組合法人에 出資하고 準組合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權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營漁組合法人は 그 명칭중에 營漁組合法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이 아닌 者는 營漁組合法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營漁組合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5人이상의 漁業人이 공동으로 定款을 작성하고, 기타 設立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營漁組合法人は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서 成立한다.

⑧營漁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30]

□ **수질환경보전법** [전문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시행일 2006.4.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4.22 대통령령 18796호]

[별표 1] <신설 2004.8.10>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시설기준(제2조제8항제3호관련)

1. 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 설치장소 및 폐수처리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방지시설에 재유입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수의 수집·이송·처리 및 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은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또는 차단공간) 및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우수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재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1999.8.6, 2004.8.10>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17조제2항관련)

종 별	배 출 규 모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

비고

1.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하나, 회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 청소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중증발량 + 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중발생량

2. 최초 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8 환경부령 180호]

제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1999.8.9>

특정수질유해물질(제3조관련)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1-디클로로에틸렌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05.9.8>

폐수배출시설(제5조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 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 1일 최대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2) 1일 최대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폐수량이 10m³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 시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채탄능력 8,000톤/월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 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의 기타수질 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5.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제조시설	1533	
11. 설탕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 식품제조시설	1540 1541 1543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

	1544 1549	피·차류 및 조제수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 포함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조리판매용 시설 제외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미만의 제과점·떡방앗간 제외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 가공시설 포함
21. 신발제조시설	1930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

		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액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2414	

제조시설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제조시설	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431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	24393	

조시설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5. 축전지 및 1차전지 제조시설	3140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	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품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제조시설	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10만KW/시간 미만 제외
71. 수도사업시설	4100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정수능력 1,000m ³ /일 미만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세병·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 제외 -취수능력 10m ³ /일 미만 제외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m ² 이상)	51313 52213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

		생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m ³ 이상 또는 용수 1m ³ /시간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m ³ /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m ³ /일 이	공통시설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상)		시설 제외 -수영장의 정수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m ²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실험생산시설 포함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과정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류시설 제외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m³/시간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m³/일 이상)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m³/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생산제품 제조시설과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2 m³/일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		
--	--	--

[별표 3의2] <개정 2005.9.8>

기타수질오염원(제5조의2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 양어장 다.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	면허대상 수조면적 합계 500m² 이상 수조면적 합계 500m² 이상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면적 3만m² 이상 또는 3홀

		이상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양식 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	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
5.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 시설 나.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	1대 이상 1대 이상

	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한다)	폐수발생량 1일 0.01㎡ 이상 1대 이상

비 고 : 수산물 양식시설의 대상란 나목 및 다목의 시설중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제외한다.

□ 어촌·어항법 [제정 2005.5.31 법률 757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85호], 시행일
2006.3.30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奧地開發促進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8호]<한시법>
第9條 (開發計劃의 확정) ①行政自治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
에 의하여 수립된 開發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9.1.21, 2001.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開發計劃은 關係 中央行
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쳐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大統
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8>

③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
計劃을 확정 또는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關係 中央行政

機關의 長과 關係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56호],
시행일 2006.6.24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
다. <개정 1997.12.13, 2000.1.28, 2004.12.31, 2005.12.23>

1. “流通團地”라 함은 流通施設과 支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
하는 一團의 土地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56호], 시행
일 2006.6.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개정 2004.1.20, 2005.12.23>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
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8호]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
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
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의료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3호]

第17條 (洗濯物の 처리<개정 1999.2.8>) ①醫療機關에서 발생하는洗濯物은 醫療人·醫療機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한 者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改正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2002.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洗濯物을 처리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衛生的으로 보관·運搬·처리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洗濯物을 처리하는 者의 施設 및 裝備基準, 申告節次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 **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15호]

第3條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①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 및 信託會社(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資産流動化에 관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의 범위, 流動化證券의 종류, 流動化資産의 관리방법등 資産流動化에 관한 計劃(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資産流動化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流動化專門會社등(信託會社를 제외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수 있는 資産流動化計劃은 1개에 한한다.

③流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類를 갖추어야 한다.

④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流動化計劃을 登錄한 경우에는 證券去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 發行인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1>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19073호]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주차장·교량·궤도·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8호], 시행일 2006.6.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2004.3.11 법률 7188호]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電源開發促進法(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5條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①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産業자원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

領令이 정하는 電源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자원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源設備의 概要
2. 電源開發事業區域의 位置 및 面積
3. 電源開發事業의 施行期間
4. 所要資金 및 그 調達에 관한 事項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設置 및 費用負擔에 관한 事項
6. 國土自然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7. 기타 電源開發事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④ 産業자원부장관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電源開發事業區域을 管轄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の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實施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

하여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3.12.30>

⑤ 産業자원부장관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第11條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 ① 産業자원부장관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電源開發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 産業자원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③ 産業자원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④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7729호], 시행일 2006.6.15

第3條 (傳統寺刹의 지정 및 登錄)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歴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寺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統寺刹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③문화관광부장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寺刹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당해 寺刹의 住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④제3장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住持는 시·도지사에게 傳統寺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14>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의 지정과 통지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14>

□ **精神保健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精神疾患者”라 함은 精神病(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人格障礙·알코올 및 藥物中毒 기타 非精神病的 精神障礙를 가진 者를 말한다.
2. “精神保健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精神醫療機關·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 및 精神療養施設을 말한다.
3. “精神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病院級 이상의 醫療機關에 設置된 精神科를 말한다.
4. “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이하 “社會復歸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疾患者를 精神醫療機關에 入院시키거나 精神療養施設에 入所시키지 아니하고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 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5. “精神療養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醫療機關에서 의뢰된 精神疾患者와 慢性精神疾患者를 入所시켜 療養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 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제4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種子産業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3. “種子”라 함은 增殖用 또는 栽培用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種菌 또는 營養體를 말한다.

第137條 (種子業의 登錄<개정 1999.1.21>) ①種子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47조 (종자업의 등록 등) ①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갖추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종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住民登錄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7201호]

第14條 (居住地의 移動)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要請을 받은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轉出對象者가 世帶員 全員이거나 世帶主를 포함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

경우에는 個人別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世帶主를 제외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 경우에는 轉出者의 個人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移送要請을 받은 날부터 3日 이내에 정리하여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 中小企業基本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第2條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 (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者數, 資産規模,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實質的인 獨立性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②中小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小企業과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그 규모의 擴大등으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3년간은 이를 中小企業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외의 企業과의 合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中小企業施策別 特性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기타 法人·團體등을 中小企業者로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0.7 대통령령 19082호]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0.7>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1.5>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

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롯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12.29>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립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8.12.3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시행일 2006.7.1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種으로 한다. <개정 1994.12.20, 2005.1.27>

1.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

□ **지적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徵發財産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5592호]

第20條 (還買權) ①이 법에 의하여 買收한 徵發財産의 買收代金으로 支給한 證券의 償還이 終了되기 전 또는 그 償還이 終了된 날로부터 5年 이내에 당해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가 軍事上 필요없게 된 때에는 被徵發者 또는 그 相續人(이하 이 條에서 “還買權者”라 한다)은 이를 우선買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還買權者는 國家가 買收한 당시의 價格에 證券의 發行年度부터 還買年度까지 年 5분의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國庫에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89.12.21>

②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할 財産이 생긴 때에는 還買權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還買權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種

이상의 日刊新聞에 2回 이상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89.12.21>

③還買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最後의 公告가 끝난 날로부터 3月이 경과한 때에는 還買權을 行使하지 못한다.<개정 1970.12.31, 1989.12.21>

□ 철도사업법 [제정 2004.12.31 법률 730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라 함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4.9.23 법률 7219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

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3條 (體育施設의 종류) 體育施設의 종류는 運動種目 및 施設形態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2.19 대통령령 18711호]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0.1.2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 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3.5.29, 2005.5.26>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 (豫定地區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建設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規定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規定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한 날부터 2年 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된 날부터 3年 이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④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 變更 또는 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4條 (開發計劃) ①시장·군수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區로 지정·告示된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地域均衡開發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의 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에 振興地區의 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시행일 2006.4.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5.8.4, 1999.2.8, 2003.5.29>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感染性廢棄物 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第18條 (農地賣買事業등) ①公社는 專業農業人의 육성과 農業人이 아닌 者의 農地所有를 억제하기 위하여 農業人이 아니거나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등의 農地를 買入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業法人에게 우선적으로 賣渡할 수 있다.

②公社는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에게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의 선정기준 및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農地등의 再開發) ①公社는 農地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地를 再開發하거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農地所有者의 農地再開發事業에 필요한 技術과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公社는 취득·所有하는 財産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限界農地, 干拓地, 林野등 不動産 및 「농어촌정비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된 農業基盤施設을 다음 各號의 用途로 開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賃貸 또는 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金은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農地·草地 및 住宅等 農漁村聚落用地
2. 農漁村의 所得增大를 위한 商·工業用地
3. 都·農間의 交流促進을 위한 農園
4. 農漁村休養地
5.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용도

③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5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基金을 農業人에 대한 貸出金으로 運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融資한다. <개정 2005.12.29>

③삭제 <2005.12.29>

④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 **항공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시행일 2006.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2005.11.8>

6. “空港施設”이라 함은 航空機의 離陸·着陸 및 旅客·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과 그 附帶施設 및 支援施設로서 空港區域안에 있는 施設과 空港區域밖에 있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施設을 말한다.

□ **港灣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5.1.5, 1997.12.13, 1999.2.5, 2001.1.29, 2001.5.24, 2005.5.31>

6. “港灣施設”이라 함은 港灣區域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施設과 港灣區域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施設로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가. 基本施設

- (1) 航路·碇泊地·船溜場·船回場等 水域施設
- (2)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流堤·閘門·護岸等 外廓施設
- (3) 道路·橋梁·鐵道·軌道·運河等 臨港交通施設
- (4) 岸壁·物揚場·棧橋·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機能施設

- (1) 삭제 <2001.5.24>

- (2) 船舶의 入·出港을 위한 航路標識·信號·照明·港務通信 施設등 航行補助施設
- (3) 固定式 또는 移動式 荷役裝備·貨物移送施設·配管施設 등 荷役施設
- (4) 待合室·旅客乘降用 施設·小荷物取扱所등 旅客利用施設
- (5) 倉庫·野積場·컨테이너裝置場 및 컨테이너操作場·싸이로·貯油施設·貨物터미널등 貨物の 流通·販賣施設
- (6) 船舶을 위한 給油·給水施設 및 얼음의 生産供給施設등 船舶補給施設
- (7) 삭제 <2001.5.24>
- (8) 삭제 <2001.5.24>
- (9) 港灣의 管制·弘報·保安施設
- (10) 削除 <1995.1.5>
- (11) 삭제 <2001.5.24>
- (12) 港灣施設用 敷地
- (1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漁港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 (14)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漁港 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 (15) 방음벽·防塵網·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集配送場·복합화물터미널·整備庫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船用品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 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7. “貨物터미널”이라 함은 貨物의 集貨·荷役·分類·포장·보관 또는 通關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施設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倉庫”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保管施設 또는 保管場所를 말한다.